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6년 2월

석사학위 논문

광주지역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실태 및 요구조사

조선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김 지 영

광주지역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실태 및 요구조사

An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Status and the Needs of
Lifelong Education among Individuals with Hearing
Impairments in Gwangju

2016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김지영

광주지역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실태 및 요구조사

지도교수 정 은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김지영

김지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영 일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배 영 주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 은 희 (인)

2015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차

ABSTRACT	vi
I .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용어의 정의	5
II . 이론적 배경	9
1. 평생교육의 등장 배경과 역사	9
2. 평생교육의 의의와 현황	10
3. 장애인평생교육	12
4. 청각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 및 현황	30
5. 선행연구 고찰	31
III . 연구방법	35
1. 연구대상	35
2. 연구도구	40
3. 연구절차	41
4. 자료처리	42

IV. 연구결과	43
1. 광주지역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	43
2.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실태	49
3.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요구 실태	65
V. 논의	77
1.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	77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78
VI. 결론 및 제언	88
1. 결론	88
2. 제언 및 연구의 제한점	89
참고문헌	92
부록	98

표 목차

<표 II-1>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	14
<표 III-1> 대상기관의 일반적인 특성	35
<표 III-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7
<표 III-3> 설문지의 구성영역과 내용	40
<표 IV-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43
<표 IV-2>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 기관	44
<표 IV-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주체	44
<표 IV-4>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의 주된 직업	45
<표 IV-5>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	45
<표 IV-6>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	46
<표 IV-7> 청각장애인이 참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46
<표 IV-8>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47
<표 IV-9>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의 구성 형태	48
<표 IV-10> 청각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순위	48
<표 IV-11>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유도 방안	49
<표 IV-12> 인구학적 변인별 평생교육에 대한 인지정도	50
<표 IV-13> 인구학적 변인별 평생교육의 필요성	52
<표 IV-14>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	54
<표 IV-15> 인구학적 변인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	55
<표 IV-16> 인구학적 변인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목적	58
<표 IV-17>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접근 매체	60
<표 IV-18>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	61
<표 IV-19> 담당 강사의 청각장애 유무	62
<표 IV-20> 담당 강사와의 의사소통 방식	62
<표 IV-21>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63
<표 IV-22>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만족스러운 영역	64
<표 IV-23>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불만족스러운 영역	65

<표 IV-24>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계획	66
<표 IV-25>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우선순위	66
<표 IV-26> 인구학적 변인별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68
<표 IV-27> 청각장애인 강사의 필요성	69
<표 IV-28> 담당 강사와의 희망하는 의사소통 방식	69
<표 IV-29>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적절한 빈도	70
<표 IV-30>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희망 운영 시간	72
<표 IV-3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적절한 수강료	72
<표 IV-32>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73
<표 IV-33>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역할	74
<표 IV-34> 추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미참여 이유	75

그림 목차

<그림 II-1> 기관현황	24
<그림 II-2> 평생교육 프로그램	25
<그림 II-3>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간 운영 횟수	26
<그림 II-4>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	26
<그림 II-5> 학력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	27
<그림 II-6> 연령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	28
<그림 II-7> 희망하는 프로그램의 종류	28

부록 목차

부록 1 기관용 설문지	98
부록 2 개인용 설문지	103

ABSTRACT

An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Status and the Needs of Lifelong Education among Individuals with Hearing Impairments in Gwangju

Ji-Young Kim

Advisor: Prof. Eun-Hee Jeong, Ph.D.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was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us and the needs of lifelong education among individuals with hearing impairments in Gwangj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providing fundamental data that can be used in developing and distributing appropriate education program for individuals with hearing impairments.

The questionnaires for welfare centers and users were written based on references that related to lifelong educations and lifelong educa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 total of 8 questionnaires for 7 welfare centers, an association of the deaf and 142 questionnaires for individuals with hearing impairments who registered at association of the deaf in Gwangju were used for the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 the operation status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t welfare centers in Gwangju, intellectual disabilities was the most frequently observed

disabilities, the age group of people were older than 50-years-old and the program that most interested in was culture and arts education. The difficulty of managing the program was insufficient funds and the program development was autonomously managed. the utilization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individuals with hearing impairments among the welfare centers, individuals with hearing impairments were participated the program at only two welfare centers, the reason to not participate was the location and the in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The type of education which individuals with hearing impairments were most interested in was vocation and work force education, a sign language interpreter required in the place was to lead individuals with hearing impairments to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

Second, looking at the utilization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 among individuals with hearing impairments, the most of individuals with hearing impairments never participate the program, the purpose of participation of the program was self-improvement and learning culture, the institution was association of the deaf, the most interest program that wants to learn was culture and arts education.

Third, the demands for lifelong education program, the preferred institution was association of the deaf, the content of program was vocation and work force education, preferred times of the program was once or twice a week and education fee was for free were the most frequently observed in the questionnaire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activate lifelong education program was developing various education programs.

In conclusion, this study will provide the guidances for improving

lifelong education program and create more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with hearing impairments to participate lifelong education program.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생애 전반에 걸친 평생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60세에 은퇴를 해도 40년을 더 살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진 것이다. 준비된 자세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 행복한 노후의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삶이 전개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데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대비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교육부, 2013b).

지금의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매일 무수히 많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 적응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학령기에만 맞춰져있는 교육체제를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체제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생 전반에 걸친 교육이 모든 시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최운실, 2015).

2013년에 시작된 박근혜정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고, 국민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다(행정자치부, 2015). 이를 위하여 평생 학습에 대한 다양한 참여 기반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마트 국가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평생학습 참여율을 OECD 평균인 40.4% 이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2013년 교육부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복지의 출발이 교육에 있고 복지의 완성이 문화에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교육-복지-문화

의 선순환체계를 확인시켰다(교육부, 2013a). 이렇듯 사회 전반에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은 커져가지만 정작 정부의 예산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2015년 교육부의 전체 예산은 55조 1,322억 원이고, 이 중 평생교육에 사용 되는 예산은 5,633억 원으로 전체 교육부 예산의 1%밖에 되지 않는다(교육부, 2015b).

이뿐만 아니라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를 살펴보면,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교육부, 2013b). 2013년도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0.2%로 만25세 이상 만 64세 이하 10명 중 3명의 성인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율이 낮기도 하지만, 참여한 사람의 개인 특성별 평생학습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 연령은 낮을수록, 학력과 소득수준은 높을수록 평생학습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졸이상 성인은 중졸이하 성인에 비해 약 2배 정도 더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평생교육의 기회가 일부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3).

이에 더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더욱 열악하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전체 장애인 75,416명 중 일반 성인의 1/10 수준인 3.6%로 매우 저조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기회가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함을 말해준다(보건복지부, 2014a).

광주지역의 경우 2004년 남구를 시작으로 5개 자치구에서 평생교육조례를 제정하였고, 2015년 6월 현재 광역시단위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전체 자치구가 교육부 지정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 광주광역시의 시설유형별 평생교육기관은 총 165개로 세부 현황은 시·군·구 평생학습관 15개,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15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6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12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22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47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28개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상 시교육청에 4개의 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민간단체인 1곳을 포함하여 총 5개뿐이

다. 일반적으로 만18세에 학령기가 마감되지만 특수학교에는 18세 이상의 학생이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광주광역시 등록 장애인 68,288명 중 19세 이상은 65,466명으로 전체의 95.8%에 해당한다(보건복지부, 2014a).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이하가 전체 장애인의 40.4%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18세에 학령기가 마감되지만 특수학교에는 18세 이상의 학생이 많이 다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장애인 중 26,448명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으로 추정된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으로 2011년부터 장애인 교육이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으로 바뀌었지만, 광주광역시의 약 26,448명의 성인장애인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지역 교육청에서의 지원과 민간단체의 노력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에서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직업과 연계되어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전공과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 기준 전체 167개의 학교 가운데 청각장애특수학교는 15개교이고 이 중 전공과가 설치되어있는 학교는 6개교에 불과하여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15a). 류문화 외(2000)에 의하면 청각장애 특수학교에 전공과가 설치되어 있어도 직종이 현실적으로 취업과 관련이 없거나 미리 정해진 직종을 강제적으로 교육받기 때문에 학생들의 취미와 특성이 도외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종을 선택할 수 있는 체제로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특수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 활동으로 장애학생이 학교를 떠나서 성인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생활을 포함하여 주거생활, 지역사회생활, 여가활동, 추후교육 등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박승희 외, 2006). 이러한 전환교육에 대해 김진호(2002;2004)는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

받을 때에 그들이 앞으로 성인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학교교육 과정과 연계된 훈련 프로그램을 받게 된다면, 그들이 성인이 되어 그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생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하였다.

장애인의 학습 요구에 관한 김도수(1998)의 연구를 시작으로 김동희(2001)와 정동영(2001)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그 후 평생교육기관의 실태조사(정인숙 외, 2005)와 평생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박은혜 외, 2007) 등이 수행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광주지역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5)가 개최되어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각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강창욱 외(2011)에 의해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지 및 선호도에 관해 한국농인들의 평생교육 실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항순(2011)의 청각장애인의 직업적응을 위한 평생교육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5년 8월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등록된 [평생교육]관련 학위논문의 수는 5,384개이고 [장애인평생교육]과 관련된 학위논문의 수는 169개이며, [청각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학위논문의 수는 2개로 나타났다. 또한 [평생학습]관련 학위논문의 수는 2,949개이고 [장애인평생학습]과 관련된 학위논문의 수는 64개로, 평생교육이나 평생학습으로 검색해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더 나아가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청각장애 특수학교가 10여 년 전부터 ‘도가니’ 사건으로 인해 청각장애학생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일반학교로 통합되어 청각장애인의 특성화된 전문교육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채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 성인 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광주지역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의 학령기 교육 및 평생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각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 실태와 그들이 요구하는 프로

그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실제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주지역 청각장애인에게 효과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광주지역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청각장애인들의 이용 실태 및 그들이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청각장애인의 특수교육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공교육에서 하지 못한 것을 평생교육을 통하여 어떤 내용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광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청각장애인들의 이용실태는 어떠한지와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광주지역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광주지역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광주지역 청각장애인들이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방안은 무엇인가?

3. 용어의 정의

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

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평생교육법, 2014). 본 연구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6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다.

2) 장애인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에는 ①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②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③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④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⑥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⑦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⑧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이 있다(평생교육법, 2014).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역시 평생교육의 모든 기관이 다 포함되고 이를 지향하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기관으로 장애인복지관과 농아인협회를 포함한 8개 기관을 말한다. 장애인복지관은 법적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인숙 외(2005)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들이 학교 졸업이후 평생교육을 받은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이 34.0%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단체 23.6%,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을 바탕으로 하여 7개의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하였다. 여기에 본 연구에서의 대상이 청각장애인이므로 농아인협회를 포함하였다.

3) 청각장애인

(1) 청각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청각장애인이란 다음과 같다(장애인

복지법, 2015).

- 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 ②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 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④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언어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언어장애인이란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장애인복지법, 2015).

(3) 청각장애인의 장애등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청각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다음과 같다(장애인복지법, 2015).

- ① 제2급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dB) 이상 잃은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 ② 제3급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dB) 이상 잃은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 ③ 제4급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70(dB) 이상 잃은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 ④ 제5급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dB) 이상 잃은 사람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⑤ 제6급 - 한 귀의 청력을 80(dB)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dB) 이상 잃은 사람

(4) 언어장애인의 장애등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언어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다음과 같다(장애인복지법, 2015).

- ① 제3급 -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② 제4급 -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본 연구에서의 청각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18세 이상의 청각장애 2~3급 또는 언어장애와 중복장애를 가진 청각·언어장애 1~2급인 사람 중 광주광역시농아인협회에 등록된 사람이다.

II . 이론적 배경

1. 평생교육의 등장 배경과 역사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발생한 중요한 일들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의 태동기, 제도 정비기, 발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평생교육의 태동기에는 평생교육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사회교육이 17~18세기경, 교회를 주체로 문맹자에게 성경읽기를 가르치거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배장오, 2009).

1946년 11월에 UNESCO가 출범하면서 성인교육은 보다 체계적인 기틀을 갖추게 되고 평생교육의 전환기를 맞게 된다. UNESCO(www.unesco.org)는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전문기구이다(윤옥한, 2014). 1965년 Lengrand이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일생을 통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등의 내용으로 UNESCO 사무국에 「평생교육에 관하여」라는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세계적인 수준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다(김용현 외, 2010). UNESCO 세계성인교육회의는 1949년 덴마크에서 개최된 이후 12년 마다 열려 세계 성인교육의 흐름을 되짚어 보고 시대적 변화에 맞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면서, 2009년 제6차 회의까지 대회를 거듭할수록 평생교육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평생교육이 학문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정인숙 외, 2005).

한편, 평생교육의 발전기에는 한국에서도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배장오, 2009). 1980년에는 헌법에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를 명문화 하고, 1982년에는 「사회교육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평생교육진흥을 국가 차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평생교육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9년에는 「사회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개정하면서 평생교육 개념을 도입하며,

성인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정책 사업을 추진하였다. 평생교육진흥 정책이 대두된 2007년에는 「평생교육법」을 전면 개정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평생학습 문화 관련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9년에는 「평생교육법」을 일부 개정하여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계좌제를 추진하고, 제3차(2013년~2017년)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재까지 평생교육정책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교육부, 2014).

2. 평생교육의 의의와 현황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평생교육법, 2014).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성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정한 시기에 습득한 지식과 기술로는 전 생애를 살아가기에 충분하지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직업교육 및 재취업교육, 다양한 취미 및 여가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교육 등 생애 주기에 따른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학교교육만으로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새로운 영역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정해진 체제에 따라 진행되는 학교교육만으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진 평생교육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박경실 외, 2013).

「2013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3)를 통해 평생교육의 최근 현황을 알아보면, 2013년 기준 평생교육기관은 총 4,992개소이며, 평생학습 참여율은 30.2%로 2012년의 35.6%에 비해 5.4%가 줄어들었다. 2013년도에 통계조사의 규모와 방법에 변화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하락폭이 크므로 평

생교육에 대한 홍보 및 기관 확대, 교육비 지원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참여율은 남성은 학교 형태의 교육에, 여성은 사회교육 형태의 교육에 참여율이 높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25~34세가 30.8%이고 55~64세는 25.1%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생학습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통계조사 대상에 64세 이후도 포함시켜야 하고 100세 시대에 맞춰 평생학습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015년 교육부는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평생교육’을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첫째, 산업 현장과 교육을 하나로 연결시켜 교육을 통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대학에 성인(평생)학부를 도입하여 취업 후에도 계속적으로 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후 학습 체계를 확충하여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둘째, 전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충 및 지역단위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가평생학습포털에 민간 콘텐츠를 추가 확보하고 평생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행복학습센터를 확대하여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한 창업·재취업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셋째,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학업중단자 등) 방송중학교를 확대하여 중등학교 미학력 성인 및 학업중단 청소년 등에 대해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유휴 학교시설 등을 활용하여 문해교육 기회제공을 확대하며, 경력 단절 여성과 은퇴자 등을 위하여 지자체·대학의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제2의 경력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넷째, 전 국민 대상 인문학 대중화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대학·지자체가 연계·협력하여 인문자산을 활용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인문도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민인문강좌에 청중의 다양화를 유도하며 인문학 국제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교육부, 2015b).

3. 장애인 평생교육

1)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 및 의의

국제적으로 학습권 보장을 제기한 것은 1985년 유네스코 국제성인교육회의에서 채택된 「학습권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박은주, 2005). 이 선언은 교육조건이 정비된 상황에서 학습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라는 것과 장애인이나, 고령자, 비문해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학습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더욱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김도수, 1998). 특히 장애인은 장애를 입은 순간부터 평생 동안 결손된 기능의 개선과 회복이 요구되고 비장애인과 통합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생존으로서의 평생교육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김순일, 1998).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장애를 가진 성인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장애를 가진 성인도 학습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학습권 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생존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면에서 보면 일반 성인보다 장애 성인은 사회생활 적응을 비롯하여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의 요구가 평생 동안 계속된다고 할 수 있다(김도수, 1999). 이에 대하여 장미숙(2014)은 장애인들은 대체적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장애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인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서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평생교육은 필수 불가결하며,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특별한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조흥식(2001)은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자아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평생교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통해 교육을 받아야 함은 지극히 당연할 뿐 아니라 고도 산업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학습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삶의 질’과 깊은 연관을 맺으며, 삶의 질은 인간의 물질적·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질적 수준과 인간적 삶의 가치 문제를 다루게 되며, 사회·문화적 체제나 가치관, 관습 및 개개인의 욕구에 대한 충족수준과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상대적 개념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복지적 측면에서 물질적·경제적 조건만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였다면, 이제 ‘삶의 질’ 측면에서 일반인과 통합되는 환경의 변화와 함께, 배우고자 하는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정인숙, 2005).

2)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헌법 제 31조에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교육관련 최고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제3조에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학습권을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법인 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 제1조)은 1982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이 학교 중심 교육의 하위법 정도로 작용하고, 법의 적용 범위 또한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9년에 평생교육의 적용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평생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중점을 둔 평생교육법으로 개정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제 20조에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와 34조에는 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과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14조에는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장애인이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편의제공 의무에 관하여 명시하고, 광주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의 정의에 “장애인 야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명시하였다. 2014년도에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평생교육 대상자 중 장애인의 장애영역을 구체화하였다. 마지막으로 2006년 UN에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을 재차 확인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밝힌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있다. 국제조약은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구체적인 법적 내용을 살펴보면 <표 11-1>과 같다.

<표 11-1>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

법률	내용
헌법	<p>제 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p> <p>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p>
교육기본법	<p>제 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제 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p>
평생교육법	<p>제 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조(정의)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p> <p>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p>

<표 II-1>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 (표 계속)

	<p>제 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제 39조(문자해득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장애인복지법</p>	<p>제 20조(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④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에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p> <p>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표 II-1>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 (표 계속)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p>제 33조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 「평생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센터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여야 한다.</p> <p>④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p> <p>제 34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p>
----------------------	--

<표 II-1>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 (표 계속)

<p>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p>	<p>제 3조(정의) ⑥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p> <p>제 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p> <p>①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p> <p>②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p> <p>③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p> <p>④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의사소통 수단</p>
---------------------------------	--

<표 II-1>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 (표 계속)

<p>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p>	<p>제 2조(정의) ①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장애인 야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p> <p>② “교육 소외계층”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성인, 저학력 성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등을 말한다.</p> <p>※ 전국의 평생교육진흥조례 현황(광역 및 자치구 포함)</p> <table border="1" data-bbox="381 788 1186 1091"> <thead> <tr> <th>지 역</th> <th>서 울 산</th> <th>부 산</th> <th>대 구</th> <th>인 천</th> <th>광 주</th> <th>대 전</th> <th>울 산</th> <th>세 종</th> <th>경 기</th> <th>강 원</th> <th>충 북</th> <th>충 남</th> <th>전 북</th> <th>전 남</th> <th>경 북</th> <th>경 남</th> <th>제 주</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조 례 수</td> <td>21</td> <td>10</td> <td>8</td> <td>11</td> <td>4</td> <td>2</td> <td>4</td> <td>1</td> <td>31</td> <td>14</td> <td>11</td> <td>6</td> <td>11</td> <td>6</td> <td>20</td> <td>25</td> <td>1</td> <td>186</td> </tr> </tbody> </table>	지 역	서 울 산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조 례 수	21	10	8	11	4	2	4	1	31	14	11	6	11	6	20	25	1	186
지 역	서 울 산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조 례 수	21	10	8	11	4	2	4	1	31	14	11	6	11	6	20	25	1	186																					
<p>발달장애인 관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제 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p>																																						

<표 II-1>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 (표 계속)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 8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센터의 위치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둔다.</p> <p>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다.</p> <p>④ 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p> <p>⑤ 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p>
<p>국제장애인 권리협약</p>	<p>제 24조(교육)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p>

3)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실태조사와 교육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평생교육백서 및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실시한 특수교육실태조사와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년~2017년)에 나타난 장애인의 평생교육현황은 다음과 같다.

(1)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나타난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장애인의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28.8%, ‘고등학교’ 28.1%, ‘중학교’ 16.2%, ‘대학이상’ 15.3%, 그리고 ‘무학’ 이 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20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의 교육정도인 ‘초등학교’ 32.9%, ‘고등학교’ 25.0%, ‘중학교’ 18.3%, ‘대학이상’ 12.0%, ‘무학’ 11.8% 순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무학’ 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체 국민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14.4%, ‘중학교’ 14.5%, ‘고등학교’ 51.7%, ‘대학이상’ 19.4%이다(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교육정도가 고등학교 이상인 비중은 장애인이 49.0% 그리고 전체 국민이 71.1%로 장애인의 고등학교 이상 교육비율은 전체 국민 평균보다 약 22.1% 낮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 ‘무학’ 비율은 청각장애(19.4%), 뇌병변장애(12.3%), 지체장애(11.7%) 등이 비교적 높으며, ‘대학이상’ 비율은 안면장애(34.7%), 정신장애(28.6%), 신장장애(24.3%), 간장애(20.0%)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 이 70.1%로 가장 많고 다음이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함’ (13.0%)과 ‘심한 장애’ (6.8%)가 그 뒤를 잇고 있어 앞으로 정부는 장애인 의무교육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시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위의 세 가지 장애인 미취학 및 학교 중도포기 사유는 정부의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통해 최소로 줄일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같은 장애인 교육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의 경우 장애인 대부분이 참여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미참여 경험 96.4% 이상). 미약한 수치지만 각 프로그램별 참여 경험정도를 보면, 문화·체육·예술 교육(2.6%), 직업능력 향상교육(1.4%), 성인 기초 및 문자해득교육(0.4%)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 자폐성장애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많았는데, 구체적으로는 문화·체육·예술 교육(15.7%), 직업능력 향상교육(11.3%), 학력보완교육(4.2%)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참여프로그램 수는 1개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비율을 프로그램별로 보면, 성인 기초 및 문자해득교육(96.6%), 학력보완교육(95.4%), 문화·체육·예술 교육(72.7%), 인문교양 교육(72.1%) 등의 순서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의 경우 인문교양 교육과 문화·체육·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이수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서 이들 주제에 대해 지적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영역은 비록 응답비율은 낮지만 ‘문화·체육·예술 교육’이 13.0%로 가장 많고 다음은 ‘직업능력 향상교육’ (8.4%), ‘학력보완교육’ (3.6%), ‘인문교양 교육’ (2.7%), ‘성인 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2.4%) 등의 순서이다(‘없음’ 제외). 장애유형들 중 지적장애인이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영역은 ‘직업능력 향상교육’ (23.0%), ‘문화·체육·예술 교육’ (9.1%), ‘학력보완교육’ (4.3%)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프로그램 홍보의 강화’ (28.3%), ‘학습 보조금 지원’ (22.7%),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 운영’ (22.0%), ‘교육기관까지의 이동 방법지원’ (16.1%)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볼 때, 지적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 운영’ (47.4%), ‘학습 보조금 지원’ (16.4%), ‘교육기관까지의 이동 방법지원’ (10.7%) 등이 주를 이루며 자폐성장애인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67.0%)을 가장 필요로 하였다.

(2) 2012년 평생교육 백서에 나타난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2013년 평생교육 백서가 발간되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은 조사되지 않아서 2012년 평생교육 백서를 참고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009년 기준으로 전국 379개 평생학습관의 13,232개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88개에 불과하였다(교육부, 2011). 이런 맥락에서 교육기회를 가지지 못한 장애성인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2007년), 「특수교육발전 5개년(2008년~2012년)계획」,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10년), 「제2차 평생교육 진흥기본계획(2008년~2012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2008년)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지역사회에 기반한 장애성인 평생교육 서비스 전달 체제 구축 및 지원 등 지속적 조치를 교육부가 계획하였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국립특수교육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하여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성인 학습자에게 성인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등과정과 중학과정 장애성인 문해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등학교 이후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과 취업 기회에서 제외된 장애성인을 위하여 지역사회 대학시설을 활용한 장애성인 대상 평생학습기회를 확대·제공해오고 있다.

2011년에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국립특수교육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연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이미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성인문해 교과서 초등과정 교과서 개발지침, 교과서, 지도서 등을 준거로 지적 장애 성인을 위한 초등과정 문해 교과서를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는 특수교육분야 교수 및 연구자, 특수학교 교원, 장애인 야학기관 교원, 장애인 복지시설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연구와 교과서 집필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2012년에도 교육부 특별교부

금 예산으로 국립특수교육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연계하여 중학과정 국어과 성인문해 교과서를 지적 장애성인의 수준에 맞추어 교과서와 지도서를 개발하여 발행하였다. 이외에도 국립특수교육원은 지역사회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설립되어 있는 대학교를 공모로 선정하여 공교육 이후 취업과 진학을 하지 않은 장애성인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을 2011년부터 지원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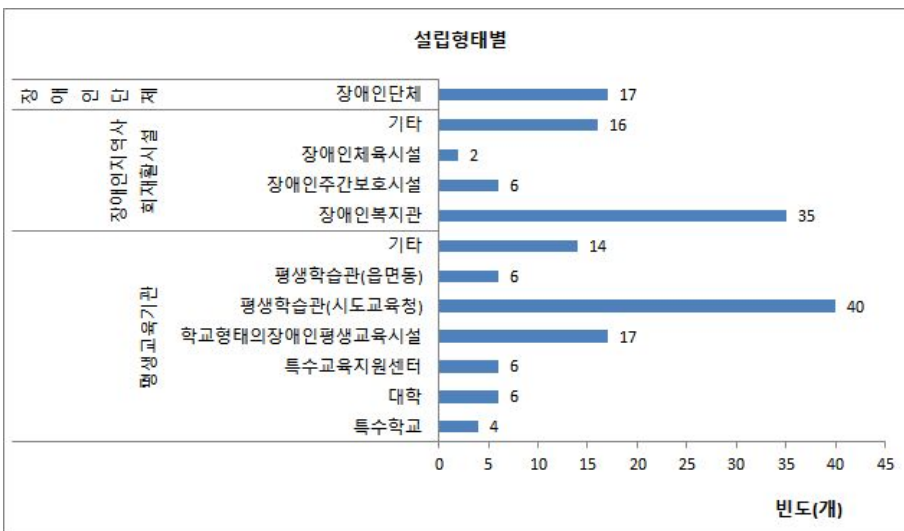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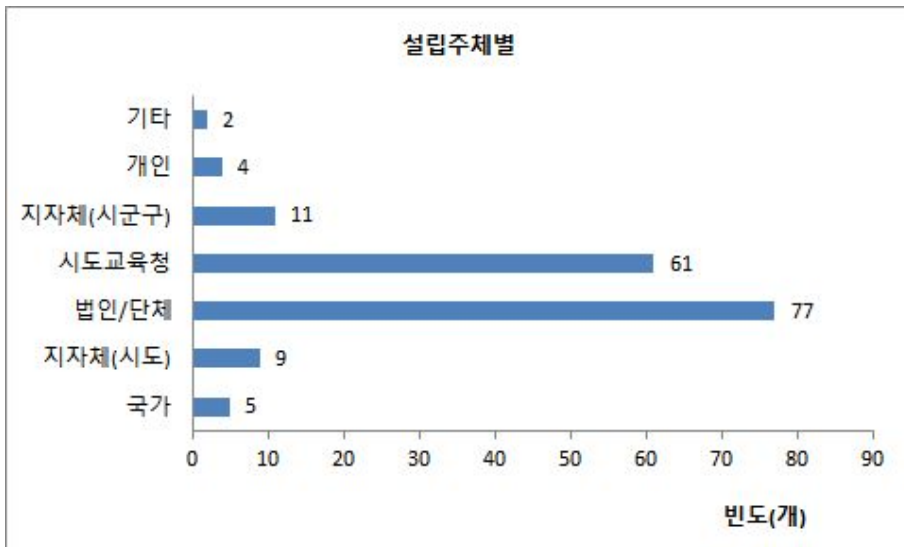
이러한 장애성인 평생교육 정책사업의 운영결과 나타난 시사점은 첫째, 교육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의 학력 이수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특성 및 수준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학력 취득을 위한 학습 기회 접근의 장애요인은 다양하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장애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2010년도에 수립한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제시된 핵심 정책사업은 추진되지 못했거나 일부 범위에 국한되어 추진되었다. 이와 더불어 장애성인 및 관계자(교육자 및 부모 등)의 장애성인 대상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문해교육 및 학력취득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전국의 다양한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성인이 보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 공공기관의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 영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서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3) 2014년 특수교육실태조사에 나타난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전체 조사 기관은 169개 기관이며, <그림 II-1>과 같이 설립 주체별로 법인/단체가 77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시도교육청이 6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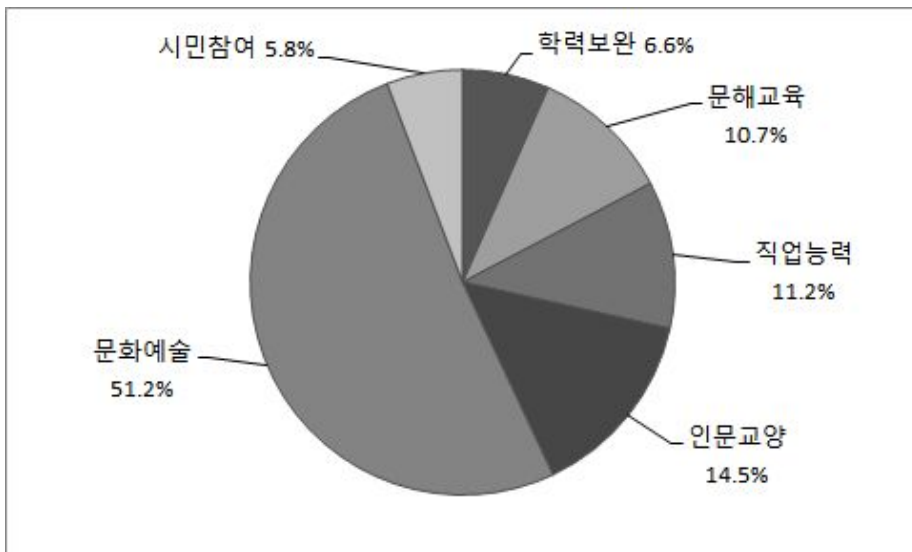
설립 형태별로는 평생교육기관 중 ‘평생교육학습관(시도교육청)’이 전체의 23.6%인 40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10.1%인 17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이 20.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타’가 9.4%로 나타났다.

<그림 II-1> 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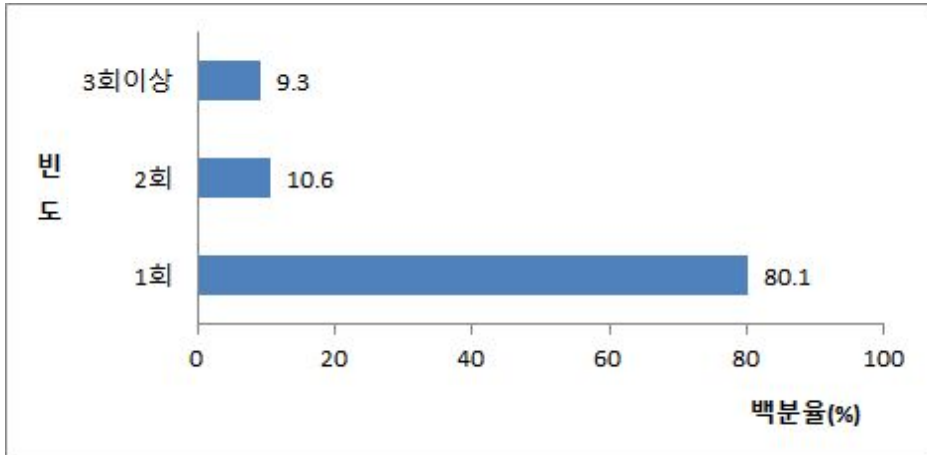
기관에서 운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그림 11-2>와 같이 ‘문화예술’ 이 51.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문교양’ 이 14.5%로 나타났다. 설립 형태별로 살펴보면, 평생교육학습관(시도교육청)은 ‘문화예술’ (69.9%), ‘인문교양’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복지관은 ‘문화예술’ (59.1%), ‘인문교양’ (21.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1-2> 평생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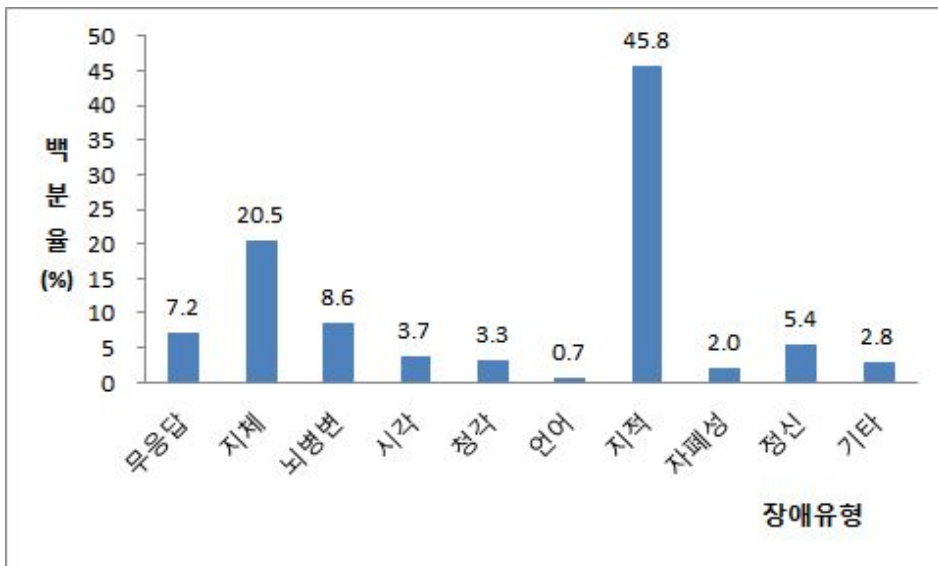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간 운영 횟수는 <그림 11-3>과 같이 ‘1회’ 프로그램이 80.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회’ 가 10.6%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3회 미만의 단수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설립 형태별로 보면, 평생교육학습관(시도교육청)은 ‘1회’ (78.4%), ‘2회’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복지관은 ‘1회’ (85.2%), ‘2회’ (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1-3>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간 운영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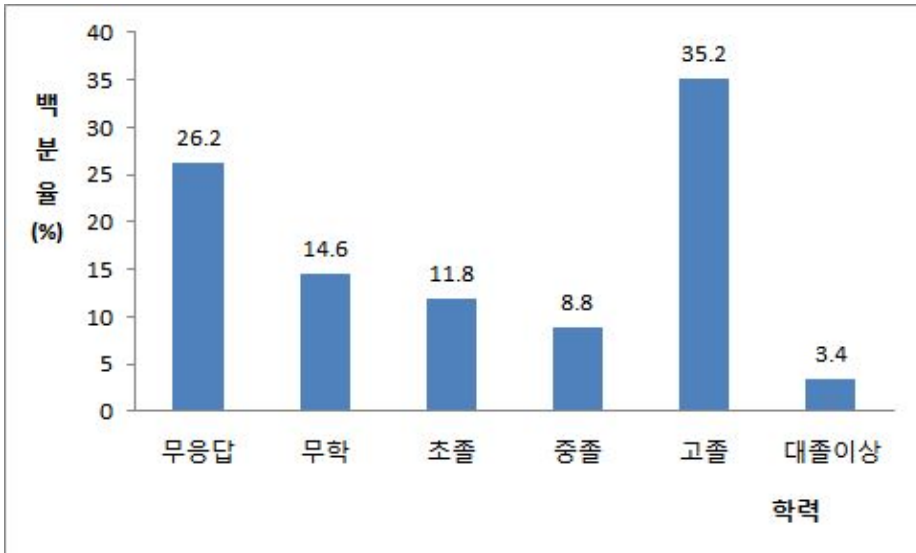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그림 11-4>와 같이 ‘지적장애’가 4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체장애’가 20.5%, ‘뇌병변장애’가 8.6%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11-4>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



학력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그림 11-5>와 같이 무응답을 제외하고 ‘고졸’이 전체의 3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무학’이 14.6%로 나타났으며, ‘대졸이상’의 학력자는 3.4%로 나타났다.

<그림 11-5> 학력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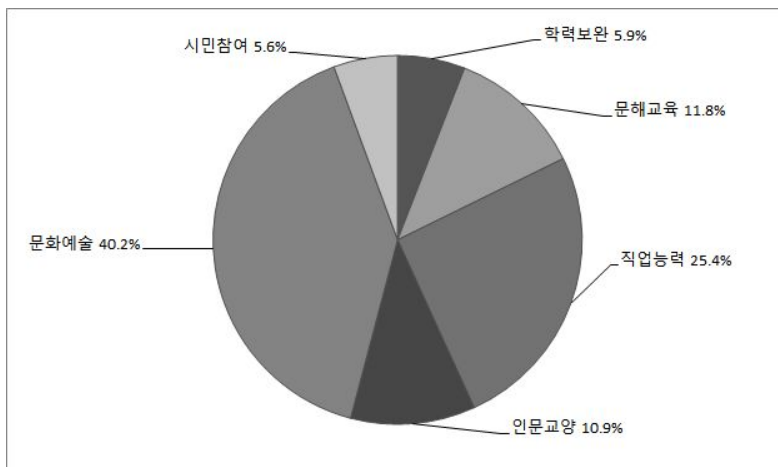
연령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그림 11-6>과 같이 무응답을 제외하고 ‘25~34세’ (19.6%), ‘45~54세’ (14.6%) 등으로 나타났다. 설립형태별로 살펴보면, 평생학습관(시도교육청)은 ‘18~24세’ (11.8%), ‘65세이상’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장애인복지관은 ‘65세이상’ (22.4%), ‘45~54세’ (2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참여자 중 55세 이상이 42.3%를 차지하고 있어, 중·고령층 장애인이 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6> 연령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



희망하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그림 11-7>과 같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40.2%로 가장 높았고, ‘직업능력향상’ 25.4%, ‘성인기초/문해교육’ 11.8%, ‘학력보완’ 5.9%, ‘시민참여’ 5.6%로 나타났다.

<그림 11-7> 희망하는 프로그램의 종류



프로그램 운영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다는

의견이 3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는 경우가 30.2%로 나타나 장애인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은 ‘예산부족’이 3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조인력 부족’이 23.1%로 나타나 주로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에 곤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와 2014년 특수교육실태조사를 종합해보면,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종류로 ‘문화·체육·예술교육’과 ‘직업능력향상교육’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그에 대한 지원이나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년~2017년)에 나타난 장애인 평생교육

첫째,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환경을 구축한다. 이는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평생교육 참여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추진 내용으로는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을 활용한 장애 성인 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한다. 특히 장애인용 원격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교육콘텐츠 개발(OER 서비스 연계) 및 기존 평생교육프로그램 전환 지원(공공기관 활용)과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능력개발원 등을 통한 장애성인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에 활용한다. 그리고 장애성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방송중·고, 방송대 및 국·공립 평생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실시하며, 지자체-교육청-평생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컨설팅 등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확산한다.

둘째, 장애성인 대상 문해교육 및 학력 취득 프로그램의 참여를 지원한다. 이는 공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평생학습을 통한 학력 보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해교육을 통한 학력 인정, 방송중·고등에 장애성인 진입 경로 구축 및 학습을 지원하고, 장애성인의 교육 요구

조사, 장애성인 교재 교구 개발 및 보급, 장애인 대상 원격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각장애인 대상 자막처리, 시각장애인 대상 음성지원 프로그램 전환 등 장애인을 위한 기존 평생교육 콘텐츠를 전환하고자 한다.

4. 청각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 및 현황

1) 청각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청각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무학’ 19.4%, ‘대학 이상’ 11.5%로 다른 장애 평균(‘무학’ 11.6%, ‘대학이상’ 15.3%)보다 무학의 비율은 월등히 높고 고학력은 낮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4a). 청각장애인의 학력에 따른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황현철(2011)의 연구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관리자나 사무종사자의 선택이 증가하였고, 학력이 낮을수록 농림어업종사자, 자영업, 단순노무직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의 부재는 전문화된 직업을 갖기가 어렵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기술습득이 어려워 다양한 직종에 참여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청각장애인에게 문해교육 및 학력보완교육이 중요하고 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각장애인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69.7%로 가장 많고 다음이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함’ (12.8%)과 ‘심한 장애’ (10.0%)가 그 뒤를 잇고 있어 정부는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통해 장애인 의무교육에 대한 홍보 및 적극적인 시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 청각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경우 전체 청각장애인 중 3.6%만이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적은

수치이지만 각 프로그램별 참여 경험정도를 보면, 문화·체육·예술 교육(2.6%), 학력보완교육(0.4%)의 순으로 나타났고,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 교육의 경우 각각의 참여율이 0.2%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학력보완교육의 참여는 늘고,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교육과 직업능력 향상교육의 참여율은 절반이 줄어들었다. 인문교양 교육의 경우 현저히 줄어들었고(0.9%→0.2%), 문화·체육·예술 교육은 2배 이상이 늘었으며(1.2%→2.6%), 시민참여 교육은 참여율이 없어졌다.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영역에 대한 질문에는 ‘문화·체육·예술 교육’ (15.3%), ‘직업능력 향상교육’ (6.8%),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4.2%)의 순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기회가 더 확대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영역이 ‘없음’ 이 66.6%로 나타나 앞으로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과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5. 선행연구 고찰

2015년 9월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등록된 [평생교육]관련 학위논문의 수는 5,463개, 학술지논문의 수는 3,971개이고 [장애인평생교육]과 관련된 학위논문의 수는 174개, 학술지논문의 수는 150개이며, [청각장애인평생교육]과 관련된 학위논문의 수는 2개, 학술지논문의 수는 1개로 나타났다. 또한 [평생학습]관련 학위논문의 수는 2,996개, 학술지논문의 수는 2,246개이고 [장애인평생학습]과 관련된 학위논문의 수는 64개, 학술지논문의 수는 43개로, 평생교육이나 평생학습으로 검색해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더 나아가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및 청각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선행연구 고찰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학습에 관한 욕구와 관련하여 김도수(1998)는 일반성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성인도 학습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일반성인보다 장애성인은 사회생활 적응교육 및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의 요구가 평생동안 계속된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통합 관점에서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은 단순히 지식전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중심의 생활과 관련하여 자신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통합교육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관련하여 박은혜 외(2007)는 현행 장애인 복지 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편으로 평생교육 정보를 얻지 못하여 거의 90%의 장애인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이성봉 외(2007)는 성인장애인들은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매우 절감하고 있고, 지원은 재정적인 지원과 정부의 정책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장애인 성인교육 시설 운영은 장애인 독립 평생교육시설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1년 미만의 단기 강좌로 직업교육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정동영(2001)과 김동희(2001)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고 그 내용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여 지원을 확대·제공하는 체제로 구축되어야 하며, 생애단계별로 간격이 없이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지역 내의 수평적인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부처 등 정책결정 수준별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체제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 협력체제는 장애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체제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정인숙 외(2005)는 장애인 평생교육과 기관운영의 실태 및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일반인 평생교육기관에서 일정비율의 장애인 참여를 규정하는 장애인 의무 평생교육 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둘째,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 장애인 지원 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야하며 넷째, 장애인 평생교육 행정적 지원 확대를 위하여 각 행정조직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근 실시된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5)에서는 광주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전반적인 현황과 발전과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성인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합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직업과 관련하여 특수교육에서 직업교육과 연계하고, 다양한 직업군의 개발 및 전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행·재정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일반 평생교육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를 강제하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인력지원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하였다.

2) 청각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선행연구 고찰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선행논문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강창욱 외(2011)는 청각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처럼 이동의 제약,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평생교육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및 언어 등으로 인해 평생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강사와 의사소통하는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청각장애인들이 평생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고, 평생교육에 대한 선호도 및 필요성은 매우 높으나 참여율은 낮다고 하였다.

청각장애인의 직업적응을 위한 평생교육 필요성에 대해 이향순(2011)은 청각장애인들이 청력상실로 인해 언어소통의 부재를 겪게 되고, 이는 직업세계에서의 저숙련→단순직종→고용→저임금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청각장애인의 낮은 문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생교육 기관간의 협력체계와 학교의 공교육 교재 개발 및 수화통역서비스가 동시에 지원되어야 한다고 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청각장애인의 이용실태 및 그들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관의 담당자와 청각장애인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1) 기관의 담당자

광주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광주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7곳과 청각장애인들이 주로 이용가능한 광주광역시 농아인협회 1곳을 포함하여 총 8기관의 평생교육 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관용 설문지는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하였고, 8부를 배부하여 8부가 모두 회수(100%)되었다. 기관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대상기관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빈도(기관수)	백분율(%)
시설형태	장애인복지관	7	87.5
	농아인협회	1	12.5
	합계	8	100.0
평생교육 프로그램 주요대상	장애성인	7	87.5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1	12.5
	합계	8	100.0

<표 III-1> 대상기관의 일반적인 특성 (표 계속)

평생교육 프로그램 주요대상 연령	20세 미만	1	12.5
	20~29세	1	12.5
	30~39세	1	12.5
	50~59세	5	62.5
	합계	8	100.0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상자의 장애유형	지체장애	3	37.5
	뇌병변장애	4	50.0
	시각장애	1	12.5
	청각장애	2	25.0
	언어장애	1	12.5
	지적장애	5	62.5
	정신장애	1	12.5
	자폐성장애	3	37.5
	합계	20*	250.0

* 복수응답 (N=8)

2)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이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청각장애 2급과 3급 또는 청각·언어장애 1급과 2급으로 등록된 청각장애인, 둘째, 수화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광주광역시농아인협회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이다. 이와 같은 선정기준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농아인협회에 등록된 218명 중 200명을 표집하였다. 개인용 설문지는 우편 또는 수화통역사를 통해 인편으로 200부를 배부하여 149부가 회수(75%)되었고 7부가 미작성 및 오류가 나타나 최종 142(7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각장애인에게는 수화통역사가

직접 수화를 통해 설명하여 설문지 작성에 도움을 주었다. 이들 수화통역사 및 청각장애인통역사에게는 사전에 설문지 작성 방법에 대해 지도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42)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70	49.3
	여	72	50.7
연령	18~29세	15	10.6
	30~39세	19	13.4
	40~49세	47	33.1
	50~59세	48	33.8
	60세 이상	11	7.7
	무응답	2	1.4
최종학력	무학	15	10.6
	초등특수학교졸업	22	15.5
	초등일반학교일반학급졸업	5	3.5
	중등특수학교졸업	30	21.1
	중등일반학교특수학급졸업	2	1.4
	중등일반학교일반학급졸업	2	1.4
	고등특수학교졸업	34	23.9
	고등일반학교특수학급졸업	2	1.4
	고등일반학교일반학급졸업	3	2.1
	2,3년제 전문대학졸업	9	6.3
	4년제 대학교졸업	16	11.3
	대학원 이상	2	1.4
장애등급	1급	24	16.9
	2급	115	81.0
	3급	3	2.1

<표 III-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계속)

장애원인	유전	10	7.0
	교통사고	1	0.7
	후천적 질병(열병, 뇌수막염 등)	108	76.1
	원인불명	21	14.8
	기타	2	1.4
장애발생시기	선천성(출생시)	26	18.3
	0-1세	23	16.2
	2-3세	63	44.4
	4-6세	18	12.7
	7-12세	10	7.0
	13세 이후	2	1.4
의사소통방법	수화	110	77.5
	수화, 구화, 필담 모두 사용	23	16.2
	기타	9	6.3
직업	관리자	2	1.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	4.9
	사무 종사자	7	4.9
	서비스 종사자	4	2.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	1.4
	판매종사자	1	0.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	2.8
	단순노무 종사자	38	26.8
	학생	2	1.4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5	17.6
	무직	39	27.5
	기타	11	7.7
월평균가구소득	135만원 이하	69	48.6
	136~298만원	56	39.4
	299~427만원	17	12.0

<표 I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42명 중 성별은 남자 70명(49.3%), 여자 72명(50.7%)이다. 연령대는 50~59세 48명(33.8%), 40~49세 47명(33.1%), 30~39세 19명(13.4%), 18~29세 15명(10.6%), 60세 이상 11명(7.7%), 무응답 2명(1.4%)의 순으로 나타나 40대와 5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최종학력은 고등특수학교졸업 34명(23.9%), 중등특수학교졸업 30명(21.1%), 초등특수학교졸업 22명(15.5%), 4년제 대학교졸업 16명(11.3%), 무학 15명(10.6%), 2,3년제 전문대학졸업 9명(6.3%), 초등일반학교 일반학급졸업 5명(3.5%), 고등일반학교 일반학급졸업 3명(2.1%), 중등일반학교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그리고 고등일반학교특수학급졸업 각각 2명(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 등급은 2급 115명(81.0%), 1급 24명(16.9%), 3급 3명(2.1%)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상에서 청각장애 등급은 2급이 가장 높으나 다른 장애와 중복된 경우 1급으로 판정을 받게 된다. 장애원인은 후천적 질병 108명(76.1%), 원인불명 21명(14.8%), 유전 10명(7.0%), 기타 2명(1.4%), 교통사고 1명(0.7%)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에는 사고 등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장애발생시기는 2~3세 63명(44.4%), 선천적 26명(18.3%), 0~1세 23명(16.2%), 4~6세 18명(12.7%), 7~12세 10명(7.0%), 13세 이후 2명(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된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수화 110명(77.5%), 수화, 구화, 필담 모두 사용 23명(16.2%), 기타 9명(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무직 39명(27.5%), 단순노무 종사자 38명(26.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5명(17.6%), 기타 11명(7.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 각각 7명(4.9%), 서비스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각각 4명(2.8%), 관리자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및 학생 각각 2명(1.4%), 판매종사자 1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주부, 교역자, 청각장애인수화통역사 등이 있었다.

월 평균 소득은 135만원 이하 69명(48.6%), 136~298만원 56명(39.4%), 299~427만원 17명(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서적, 석·박사연구 논문 등 문헌자료를 토대로 연구 주제에 맞게 초기 설문지를 작성하여 언어청각장애 전공 지도교수 1인과 수화통역사 2인 등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아 주제 부합도, 문장의 적절성, 내용의 난이도 등에 대해 수정·보완하여 2차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이를 청각장애인통역사 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시간과 주제 부합도, 문장의 난이도 등을 수정·보완하였다. 설문 응답시간은 청각장애인 스스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7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수화통역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최종적으로 기관용 15문항, 개인용 32문항으로 완성하여 본 조사용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지의 구성영역과 내용은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설문지의 구성영역과 내용

영역	하위영역	문항수	
기관용	일반적인 사항	- 시설형태 - 대상자의 장애유형 - 프로그램 주요대상 - 대상자의 연령	4
	운영실태	- 주요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운영경비 지원기관 - 프로그램 개발주체 - 강사의 주된 직업 -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5
	청각장애인 이용실태	- 청각장애인의 참여여부 - 청각장애인의 참여내용 - 청각장애인의 미 참여 이유 - 수강생의 구성 -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내용 - 청각장애인의 참여유도 방안	6
	계		15

<표 III-3> 설문지의 구성영역과 내용 (표 계속)

영역	하위영역	문항수	
개 인 용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별 - 연령 - 최종학력 - 장애등급 - 장애원인 - 장애발생시기 - 주된 의사소통방법 - 직업 - 월평균소득	9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실태	- 평생교육 인지정도 - 평생교육 필요성 - 평생교육 참여여부 - 평생교육 참여목적 - 접근매체 - 참여기관 - 강사의 청각장애 유무 - 강사와 의사소통방식 - 참여 프로그램 내용 - 참여한 프로그램 만족 및 불만족 내용	1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요구실태	- 프로그램 참여계획 - 희망하는 기관 - 희망프로그램 내용 - 청각장애인 강사의 필요성 - 강사와 희망하는 의사소통방식 - 프로그램의 실시빈도 - 프로그램의 희망 운영시간 - 프로그램 참여비용 -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 미참여 이유 -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역할 - 개선방안 의견기술	12
	계		32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주제에 맞도록 1차 설문지를 제작하여 전문가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그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수정·보완하였고, 최종

완성된 설문지를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였다. 기관용 설문지는 직접 방문하여 배부 및 회수하였고, 오류가 나타난 경우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해결하였다. 개인용 설문지는 200부를 우편 또는 수화통역사를 통해 인편으로 배부하였고, 설문지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각장애인에게는 수화통역사가 직접 수화로 설명을 해주어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들 수화통역사 및 청각장애인통역사에게는 사전에 설문지 작성 방법에 대해 지도하였다.

4. 자료처리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들은 SPSS ver 18.0을 이용하여 문항의 특성에 따라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복수 응답을 허용하는 문항의 경우 반응백분율과 케이스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우선순위에 관한 문항은 그 우선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해석하였고, 변인별 분포를 알아보는 문항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광주지역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

광주지역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관하여 주요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운영 경비 지원 기관, 프로그램 개발주체, 강사의 주된 직업,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을 알아보았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광주지역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표 IV-1>과 같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6개 영역 중 문화예술교육이 6곳(75.0%)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능력교육이 4곳(50.0%), 기초문해교육 3곳(37.5%), 인문교양교육과 시민참여교육이 각각 1곳(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N=8)

구분		빈도	백분율	케이스
영역	세부프로그램 내용	(기관수)	(%)	백분율(%)
기초문해교육	한글교실, 밝은세상 누리교실	3	20.0	37.5
직업능력교육	컴퓨터자격증, 커피바리스타과정, 취업하Job, 발달장애인이여 직업을 향해 싸라!	4	26.7	50.0
문화예술교육	코바늘인형만들기, 비누마을, 파랑새오카리나, 스텝바이스텝 즐거운 댄스, 팝콘과 함께 무언의 영화감상하기, 원예체험으로 힐링하기	6	40.0	75.0
인문교양교육	인문학강좌	1	6.7	12.5
시민참여교육	장애인식개선퀴즈쇼 “도전!골드벨”	1	6.7	12.5
합계		15*	100.0	187.5

* 복수응답

2)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 기관

수강생들이 부담하는 교육비 외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기관에 대한 응답은 <표 IV-2>와 같이 지원기관 없이 자체경비로 운영하는 곳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곳이 각각 4곳(50.0%)으로 나타났다.

<표 IV-2>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 기관

구분	빈도(기관수)	백분율(%)
없음	4	50.0
지방자치단체	4	50.0
합계	8	100.0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주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주체에 대한 응답에는 <표 IV-3>과 같이 기관자체 개발이 4곳(50.0%)으로 가장 높았고, 타 기관 프로그램 활용 2곳(25.0%), 전문가 의뢰와 설문지 등을 통한 수강생들의 요구수렴이 각각 1곳(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주체

구분	빈도(기관수)	백분율(%)
전문가 의뢰	1	12.5
자체 개발	4	50.0
타 기관 프로그램 활용	2	25.0
설문지 등을 통한 수강생들의 요구 수렴	1	12.5
합계	8	100.0

4)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의 주된 직업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의 주된 직업에 대한 응답에는 <표 IV-4>와 같이 관련분야 전문 강사가 5곳(62.5%)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사 2곳(25.0%), 직업재활사 1곳(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의 주된 직업

구분	빈도(기관수)	백분율(%)
사회복지사	2	25.0
직업재활사	1	12.5
관련분야전문강사	5	62.5
합계	8	100.0

5)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한 응답에는 <표 IV-5>와 같이 예산 확보가 5곳(62.5%)으로 가장 높았고, 강사 확보와 시설 확보 및 수강생 확보가 각각 1곳(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5>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

구분	빈도(기관수)	백분율(%)
강사 확보	1	12.5
예산 확보	5	62.5
시설 확보	1	12.5
수강생 확보	1	12.5
합계	8	100.0

6)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이 참여하는지에 대한 응답에는 <표 IV-6>과 같이 총 8개의 기관 중 6곳(75.0%)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2곳(25.0%)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

구분	빈도(기관수)	백분율(%)
예	2	25.0
아니오	6	75.0
합계	8	100.0

7) 청각장애인이 참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청각장애인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2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응답에는 <표 IV-7>과 같이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각각 1곳(50.0%)으로 나타났다.

<표 IV-7> 청각장애인이 참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N=2)

구분	빈도(기관수)	백분율(%)	케이스백분율(%)
직업능력교육	1	33.3	50.0
문화예술교육	1	33.3	50.0
인문교양교육	1	33.3	50.0
합계	3*	100.0	150.0

* 복수응답

8)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청각장애인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 본 결과 <표 IV-8>과 같이 교육 장소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이 3곳(37.5%)으로 가장 많았고,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와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안내 및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각각 2곳(25.0%), 기관의 특성과 맞지 않아서가 1곳(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8>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구분	빈도(기관수)	백분율(%)
교육 장소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	3	37.5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2	25.0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안내 및 정보가 부족하다	2	25.0
기관의 특성과 맞지 않다	1	12.5
합계	8	100.0

9)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의 구성 형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의 구성 형태에 대한 응답에는 <표 IV-9>와 같이 장애유형별로 구분하여 반을 구성하는 기관이 5곳(62.5%)으로 가장 많았고, 모든 수강생을 혼합하여 반을 구성하는 기관이 2곳(25.0%), 청각장애인만을 위한 반을 구성하는 기관이 1곳(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9>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의 구성 형태

구분	빈도(기관수)	백분율(%)
장애유형별로 구분하여 반을 구성	5	62.5
청각장애인만을 위한 반을 구성	1	12.5
모든 수강생을 혼합하여 반을 구성	2	25.0
합계	8	100.0

10) 청각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순위

청각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순위에 대한 응답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해 중요도순으로 1순위에 3점, 2순위에 2점, 3순위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해석하였다.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결과는 <표 IV-10>과 같이 1순위에는 직업능력교육이 19점으로 가장 높았고, 2순위는 인문교양교육이 13점, 3순위는 문화예술교육이 6점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청각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기초문해교육	1*3	1*2	-	5
학력보완교육	-	2*2	-	4
직업능력교육	5*3	2*2	-	19
문화예술교육	-	1*2	4*1	6
인문교양교육	2*3	2*2	4*1	13
빈도(기관수)	8	8	8	

11)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유도 방안

청각장애인이 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응답에는 <표 IV-11>과 같이 수화통역사 배치가 4곳(50.0%)으로 가장 높았고,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 3곳(37.5%), 프로그램의 다양화 1곳(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유도 방안

구분	빈도(기관수)	백분율(%)
프로그램의 다양화	1	12.5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	3	37.5
수화통역사 배치	4	50.0
합계	8	100.0

2.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실태

1) 평생교육에 대한 인지정도

청각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평생교육에 대한 인지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교차분석의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전체적으로 다소 알고 있는 편이 54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전혀 알지 못한다가 44명(31.0%), 별로 잘 알지 못한다가 29명(20.4%), 매우 잘 알고 있다가 15명(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인의 학력과 평생교육에 대한 인지정도는 2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교과정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학이상의 5가지의 변수로 수정하여 실시한 결과 평생교육에 대해 별로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학의 경우 14명(93.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졸업 16명(59.2%), 중학교졸업 16명(47.1%), 고등학교졸업 23명(58.9%), 대학교이상 4명(14.8%)으로 나타나 최종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통합교육유무는 청각장애인의 특성상 특수학교졸업과 일반학교졸업으로 변수를 수정하여 실시한 결과 평생교육에 대해 별로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특수학교졸업의 경우 46명(53.5%)으로 나타났고, 일반학교졸업의 경우 13명(31.7%)으로 나타나 특수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평생교육에 대한 인지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별, 연령, 장애발생시기, 월평균소득 등은 평생교육에 대한 인지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인구학적 변인별 평생교육에 대한 인지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알지 못한다.	별로 잘 알지 못한다.	다소 알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합계
성 별	남	21(30.0)	14(20.0)	29(41.4)	6(8.6)	70(100.0)
	여	23(31.9)	15(20.8)	25(34.7)	9(12.5)	72(100.0)
	합계	44(31.0)	29(20.4)	54(38.0)	15(10.6)	142(100.0)
$\chi^2 = .994^a$ (df=3, p=.803)						
연 령	20대	4(26.7)	4(26.7)	5(33.3)	2(13.3)	15(100.0)
	30~40대	17(25.8)	13(19.7)	26(39.4)	10(15.2)	66(100.0)
	50대 이상	23(39.0)	11(18.6)	23(39.0)	2(3.4)	59(100.0)
	무응답	0(0.0)	1(50.0)	0(0.0)	1(50.0)	2(100.0)
	합계	44(31.0)	29(20.4)	54(38.0)	15(10.6)	142(100.0)
$\chi^2 = 11.899^a$ (df=9, p=.219)						

<표 IV-12> 인구학적 변인별 평생교육에 대한 인지정도 (표 계속) 단위 : 명(%)

학 교 과 정	무학	10(66.7)	4(26.7)	1(6.7)	0(0.0)	15(100.0)
	초등학교졸업	12(44.4)	4(14.8)	8(29.6)	3(11.1)	27(100.0)
	중학교졸업	9(26.5)	7(20.6)	17(50.0)	1(2.9)	34(100.0)
	고등학교졸업	13(33.3)	10(25.6)	11(28.2)	5(12.8)	39(100.0)
	대학이상	0(0.0)	4(14.8)	17(63.0)	6(22.2)	27(100.0)
	합계	44(31.0)	29(20.4)	54(38.0)	15(10.6)	142(100.0)
$\chi^2 = 36.229^a$ (df=12, p=.000)***						
통 합 교 육 유 무	무학	10(66.7)	4(26.7)	1(6.7)	0(0.0)	15(100.0)
	특수학교	27(31.4)	19(22.1)	31(36.0)	9(10.5)	86(100.0)
	일반학교	7(17.1)	6(14.6)	22(53.7)	6(14.6)	41(100.0)
	합계	44(31.0)	29(20.4)	54(38.0)	15(10.6)	142(100.0)
$\chi^2 = 18.636^a$ (df=6, p=.005)**						
장 애 발 생 시 기	0~1세	18(36.7)	9(18.4)	17(34.7)	5(10.2)	49(100.0)
	2~6세	22(27.2)	19(23.5)	30(37.0)	10(12.3)	81(100.0)
	7세 이상	4(33.3)	1(8.3)	7(58.3)	0(0.0)	12(100.0)
	합계	44(31.0)	29(20.4)	54(38.0)	15(10.6)	142(100.0)
$\chi^2 = 5.234^a$ (df=6, p=.514)						
월 평 균 소 득	135만원 이하	26(37.7)	14(20.3)	24(34.8)	5(7.2)	69(48.6)
	136~298만원	16(28.6)	11(19.6)	21(37.5)	8(14.3)	56(39.4)
	299~427만원	2(11.8)	4(23.5)	9(52.9)	2(11.8)	17(12.0)
	합계	44(31.0)	29(20.4)	54(38.0)	15(10.6)	142(100.0)
$\chi^2 = 5.894^a$ (df=6, p=.435)						

p<.01, *p<.001

2)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

청각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현대인들에게 평생교육이 어느 정도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교차분석의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13>과 같다. 전체적으로 다소 필요하다는 61명(43.0%)으로 가장 높았고, 매우 필요하다는 50명(35.2%),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27명(19.0%),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4명(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성별, 연령, 학력, 장애발생시기, 월평균소득 등과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13> 인구학적 변인별 평생교육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성 별	남	1(1.4)	12(17.1)	32(45.7)	25(35.7)	70(100.0)
	여	3(4.2)	15(20.8)	29(40.3)	25(34.7)	72(100.0)
	합계	4(2.8)	27(19.0)	61(43.0)	50(35.2)	142(100.0)
$\chi^2 = 1.453^a$ (df=3, p=.693)						
연 령	20대	0(0.0)	2(13.3)	7(46.7)	6(40.0)	15(100.0)
	30~40대	1(1.5)	13(19.7)	26(39.4)	26(39.4)	66(100.0)
	50대 이상	2(3.4)	12(20.3)	27(45.8)	18(30.5)	59(100.0)
	무응답	1(50.0)	0(0.0)	1(50.0)	0(0.0)	2(100.0)
	합계	4(2.8)	27(19.0)	61(43.0)	50(35.2)	142(100.0)
$\chi^2 = 19.275^a$ (df=9, p=.023)						

<표 IV-13> 인구학적 변인별 평생교육의 필요성 (표 계속) 단위 : 명(%)

학 교 과 정	무학	0(0.0)	5(33.3)	8(53.3)	2(13.3)	15(100.0)
	초등학교졸업	2(7.4)	6(22.2)	13(48.1)	6(22.2)	27(100.0)
	중학교졸업	0(0.0)	8(23.5)	11(32.4)	15(44.1)	34(100.0)
	고등학교졸업	2(5.1)	6(15.4)	14(35.9)	17(43.6)	39(100.0)
	대학이상	0(0.0)	2(7.4)	15(55.6)	10(37.0)	27(100.0)
	합계	4(2.8)	27(19.0)	61(43.0)	50(35.2)	142(100.0)
$\chi^2 = 16.999^a$ (df=12, p=.150)						
통합 교육 유무	무학	0(0.0)	5(33.3)	8(53.3)	2(13.3)	15(100.0)
	특수학교	4(4.7)	18(20.9)	31(36.0)	33(38.4)	86(100.0)
	일반학교	0(0.0)	4(9.8)	22(53.7)	15(36.6)	41(100.0)
	합계	4(2.8)	27(19.0)	61(43.0)	50(35.2)	142(100.0)
$\chi^2 = 10.966^a$ (df=6, p=.089)						
장 애 발 생 시 기	0~1세	1(2.0)	10(20.4)	21(42.9)	17(34.7)	49(100.0)
	2~6세	2(2.5)	15(18.5)	34(42.0)	30(37.0)	81(100.0)
	7세 이상	1(8.3)	2(16.7)	6(50.0)	3(25.0)	12(100.0)
	합계	4(2.8)	27(19.0)	61(43.0)	50(35.2)	142(100.0)
$\chi^2 = 2.124^a$ (df=6, p=.908)						
월 평 균 소 득	135만원 이하	3(4.3)	11(15.9)	33(47.8)	22(31.9)	69(100.0)
	136~298만원	0(0.0)	13(23.2)	21(37.5)	22(39.3)	56(100.0)
	299~427만원	1(5.9)	3(17.6)	7(41.2)	6(35.3)	17(100.0)
	합계	4(2.8)	27(19.0)	61(43.0)	50(35.2)	142(100.0)
$\chi^2 = 4.860^a$ (df=6, p=.562)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

최근 3년 동안 몇 개 강좌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응답에는 <표 IV-14>과 같이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76명(53.5%)으로 가장 많았고, 3년 동안 1~2개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3명(30.3%), 1년에 2~3개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5명(10.6%), 1년에 4개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8명(5.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4>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

구분	빈도(명)	백분율(%)
참여한 적이 없다.	76	53.5
3년 동안 1~2개 참여한 적이 있다.	43	30.3
1년에 2~3개 참여한 적이 있다.	15	10.6
1년에 4개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	8	5.6
합계	142	100.0

청각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 간에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치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최소기대 빈도치를 낮추기 위해 참여여부에 대한 4개의 변수를 ‘참여한 적이 있다’와 ‘참여한 적이 없다’의 두 개로 수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15>와 같다. 성별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는 남성은 참여한 적이 없다가 40명(57.5%), 여성은 36명(50.0%)으로 나타나 남성이 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학력, 장애발생시기, 월평균소득 등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인구학적 변인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 단위 : 명(%)

구분		없다	있다	합계
성 별	남	40(57.1)	30(42.9)	70(100.0)
	여	36(50.0)	36(50.0)	72(100.0)
	합계	76(53.5)	66(46.5)	142(100.0)
	$\chi^2 = .728^a$ (df=1, p=.394)			
연 령	20대	7(46.7)	8(53.3)	15(100.0)
	30~40대	34(51.5)	32(48.5)	66(100.0)
	50대 이상	34(57.6)	25(42.4)	59(100.0)
	무응답	1(50.0)	1(50.0)	2(100.0)
	합계	76(53.5)	66(46.5)	142(100.0)
	$\chi^2 = .800^a$ (df=3, p=.849)			
학 교 과 정	무학	9(60.0)	6(40.0)	15(100.0)
	초등학교졸업	14(51.9)	13(48.1)	27(100.0)
	중학교졸업	16(47.1)	18(52.9)	34(100.0)
	고등학교졸업	24(61.5)	15(38.5)	39(100.0)
	대학이상	13(48.1)	14(51.9)	27(100.0)
	합계	76(53.5)	66(46.5)	142(100.0)
	$\chi^2 = 2.175^a$ (df=4, p=.704)			
통합 교육 유무	무학	9(60.0)	6(40.0)	15(100.0)
	특수학교	47(54.7)	39(45.3)	86(100.0)
	일반학교	20(48.8)	21(51.2)	41(100.0)
	합계	76(53.5)	66(46.5)	142(100.0)
	$\chi^2 = .668^a$ (df=2, p=.716)			

<표 IV-15> 인구학적 변인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표 계속)

단위 : 명(%)

장 애 발 생 시 기	0~1세	29(59.2)	20(40.8)	49(100.0)
	2~6세	41(50.6)	40(49.4)	81(100.0)
	7세 이상	6(50.0)	6(50.0)	12(100.0)
	합계	76(53.5)	66(46.5)	142(100.0)
	$\chi^2 = .966^a$ (df=2, p=.617)			
월 평 균 소 득	135만원 이하	34(49.3)	35(50.7)	69(100.0)
	136~298만원	34(60.7)	22(39.3)	56(100.0)
	299~427만원	8(47.1)	9(52.9)	17(100.0)
	합계	76(53.5)	66(46.5)	142(100.0)
	$\chi^2 = 1.950^a$ (df=2, p=.377)			

4)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목적

<표 IV-14>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66명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목적 간에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교차분석의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16>과 같다. 전체적으로 교양 및 자기계발이 29명(43.9%)으로 가장 높았고, 여가 선용 13명(19.7%), 취업 및 전직 10명(15.2%), 자격증 취득 7명(10.6%), 학점 및 졸업장 취득과 건강증진이 각각 3명(4.5%), 친목도모 1명(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목적은 남성(50.0%)과 여성(38.9%) 모두 교양 및 자기계발이 가장 높았고, 여가 선용이 뒤를 이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목적은 통계치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최소기대 빈도치를 낮추기 위해 연령에 대한 5개의 변수를 ‘20대’, ‘30~40대’, ‘50대 이상’의 3개의 변수로 수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대는 취업 및 전직 4명(50.0%), 30~40대는 교양 및 자기계발 15명(46.9%), 50대 이상은 교양 및 자기계발 13명(52.0%)이 가장 높게 나와 연령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참여 목적이 다르게 나왔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인의 학력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목적은 2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교과정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학이상의 5가지의 변수로 수정하여 실시한 결과 무학은 여가선용 5명(83.3%), 초등학교졸업은 교양 및 자기계발 5명(38.5%), 중학교졸업은 교양 및 자기계발 11명(61.1%), 고등학교졸업은 취업 및 전직과 자격증 취득이 각각 4명(26.7%), 대학이상은 교양 및 자기계발이 9명(64.3%)으로 학력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목적이 다르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통합교육유무는 청각장애인의 특성상 특수학교졸업과 일반학교졸업으로 변수를 수정하여 실시한 결과 특수학교졸업의 경우 교양 및 자기계발(41.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업 및 전직(23.1%)이 그 뒤를 이었지만, 일반학교졸업의 경우 교양 및 자기계발(57.1%), 자격증 취득(19.0%)의 순으로 나타나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졸업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발생시기, 월평균소득 등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목적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인구학적 변인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목적 단위 : 명(%)

구분		취업 및 전직	자격증 취득	학점 및 졸업장 취득	교양 및 자기계 발	건강 증진	여가 선용	친목 도모	합계
연 성	남	4 (13.3)	3 (10.0)	2 (6.7)	15 (50.0)	1 (3.3)	5 (16.7)	0 (0.0)	30 (100.0)
	여	6 (16.7)	4 (11.1)	1 (2.8)	14 (38.9)	2 (5.6)	8 (22.2)	1 (2.8)	36 (100.0)
	합계	10 (15.2)	7 (10.6)	3 (4.5)	29 (43.9)	3 (4.5)	13 (19.7)	1 (1.5)	66 (100.0)
$\chi^2 = 2.411^a$ (df=6, p=.878)									
연 연	20대	4 (50.0)	1 (12.5)	0 (0.0)	1 (12.5)	2 (25.0)	0 (0.0)	0 (0.0)	8 (100.0)
	30~40대	5 (15.6)	6 (18.8)	2 (6.3)	15 (46.9)	0 (0.0)	4 (12.5)	0 (0.0)	32 (100.0)
	50대 이상	0 (0.0)	0 (0.0)	1 (4.0)	13 (52.0)	1 (4.0)	9 (36.0)	1 (4.0)	25 (100.0)
	무응답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합계	10 (15.2)	7 (10.6)	3 (4.5)	29 (43.9)	3 (4.5)	13 (19.7)	1 (1.5)	66 (100.0)
$\chi^2 = 39.551^a$ (df=18, p=.002)**									
학 교 과 정	무학	0 (0.0)	0 (0.0)	0 (0.0)	1 (16.7)	0 (0.0)	5 (83.3)	0 (0.0)	6 (100.0)
	초등학교 졸업	2 (15.4)	0 (0.0)	0 (0.0)	5 (38.5)	2 (15.4)	3 (23.1)	1 (7.7)	13 (100.0)
	중학교 졸업	3 (16.7)	1 (5.6)	0 (0.0)	11 (61.1)	0 (0.0)	3 (16.7)	0 (0.0)	18 (100.0)
	고등학교 졸업	4 (26.7)	4 (26.7)	1 (6.7)	3 (20.0)	1 (6.7)	2 (13.3)	0 (0.0)	15 (100.0)
	대학이상	1 (7.1)	2 (14.3)	2 (14.3)	9 (64.3)	0 (0.0)	0 (0.0)	0 (0.0)	14 (100.0)
	합계	10 (15.2)	7 (10.6)	3 (4.5)	29 (43.9)	3 (4.5)	13 (19.7)	1 (1.5)	66 (100.0)
$\chi^2 = 44.331^a$ (df=24, p=.007)**									

<표 IV-16> 인구학적 변인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목적(표 계속)

단위 : 명(%)

통합교육유무	무학	0 (0.0)	0 (0.0)	0 (0.0)	1 (16.7)	0 (0.0)	5 (83.3)	0 (0.0)	6 (100.0)
	특수학교	9 (23.1)	3 (7.7)	1 (2.6)	16 (41.0)	3 (7.7)	6 (15.4)	1 (2.6)	39 (100.0)
	일반학교	1 (4.8)	4 (19.0)	2 (9.5)	12 (57.1)	0 (0.0)	2 (9.5)	0 (0.0)	21 (100.0)
	합계	10 (15.2)	7 (10.6)	3 (4.5)	29 (43.9)	3 (4.5)	13 (19.7)	1 (1.5)	66 (100.0)
$\chi^2 = 26.637^a$ (df=12, p=.009)**									
장애발생시기	0~1세	4 (20.0)	3 (15.0)	1 (5.0)	5 (25.0)	2 (10.0)	5 (25.0)	0 (0.0)	20 (100.0)
	2~6세	6 (15.0)	4 (10.0)	1 (2.5)	19 (47.5)	1 (2.5)	8 (20.0)	1 (2.5)	40 (100.0)
	7세 이상	0 (0.0)	0 (0.0)	1 (16.7)	5 (83.3)	0 (0.0)	0 (0.0)	0 (0.0)	6 (100.0)
	합계	10 (15.2)	7 (10.6)	3 (4.5)	29 (43.9)	3 (4.5)	13 (19.7)	1 (1.5)	66 (100.0)
$\chi^2 = 12.487^a$ (df=12, p=.407)									
월평균소득	135만원 이하	5 (14.3)	3 (8.6)	2 (5.7)	15 (42.9)	3 (8.6)	6 (17.1)	1 (2.9)	35 (100.0)
	136~298만원	2 (9.1)	4 (18.2)	1 (4.5)	10 (45.5)	0 (0.0)	5 (22.7)	0 (0.0)	22 (100.0)
	299~427만원	3 (33.3)	0 (0.0)	0 (0.0)	4 (44.4)	0 (0.0)	2 (22.2)	0 (0.0)	9 (100.0)
	합계	10 (15.2)	7 (10.6)	3 (4.5)	29 (43.9)	3 (4.5)	13 (19.7)	1 (1.5)	66 (100.0)
$\chi^2 = 9.122^a$ (df=12, p=.692)									

**p<.01

5)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접근 매체

<표 IV-14>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66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알게 된 매체에 대한 응답에는 <표 IV-17>과 같이 농아인협회(수화통역센터)가 53명(80.3%)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 또는 선후배 10명(15.2%), 인터넷 5명(7.6%), SNS 3명(4.5%), TV, 신문, 취업정보지 등과 학교, 공공기관이 각각 2명(3.0%), 가족 및 친지 1명(1.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7>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접근 매체(N=66)

구분	빈도(명)	백분율(%)	케이스백분율(%)
인터넷	5	6.6	7.6
TV, 신문, 취업정보지	2	2.6	3.0
학교, 공공기관	2	2.6	3.0
농아인협회(수화통역센터)	53	69.7	80.3
SNS	3	3.9	4.5
친구 또는 선후배	10	13.2	15.2
가족, 친지	1	1.3	1.5
합계	76*	100.0	115.2

* 복수응답

6)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

<표 IV-14>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66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에 대한 응답에는 <표 IV-18>과 같이 농아인협회/수화

통역센터가 52명(78.8%)으로 가장 높았고, 학원이나 전문교육원(평생교육원) 7명(10.6%), 장애인복지관 6명(9.1%), 장애인고용공단/직업전문학교 5명(7.6%), 특수학교(전공과)와 종교시설 3명(4.5%), 기타 2명(3.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8>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N=66)

구분	빈도(명)	백분율(%)	케이스백분율(%)
농아인협회/수화통역센터	52	65.8	78.8
장애인복지관	6	7.6	9.1
장애인고용공단/직업전문학교	5	6.3	7.6
특수학교(전공과)	3	3.8	4.5
대학 또는 대학부설평생교육원	1	1.3	1.5
학원이나 전문교육원(평생교육원)	7	8.9	10.6
종교시설	3	3.8	4.5
기타	2	2.5	3.0
합계	79*	100.0	119.7

* 복수응답

7) 담당 강사의 청각장애 유무

<표 IV-14>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66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의 청각장애 유무에 대한 응답에는 <표 IV-19>와 같이 청인이 51명(77.3%), 농인이 15명(22.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9> 담당 강사의 청각장애 유무

구분	빈도(명)	백분율(%)
청인	51	77.3
농인	15	22.7
합계	66	100.0

8) 담당 강사와의 의사소통 방식

<표 IV-14>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66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담당 강사와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했는지에 대한 응답에는 <표 IV-20>과 같이 수화통역사를 통한 의사소통이 50명(75.8%)으로 가장 높았고, 강사와 직접 수화로 의사소통 9명(13.6%), 강사와 필담으로 의사소통 5명(7.6%), 기타 2명(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에는 강사와 수화 및 필담으로 의사소통하는 경우와 인터넷 자막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있었다.

<표 IV-20> 담당 강사와의 의사소통 방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강사와 직접 수화로 의사소통	9	13.6
강사와 필담으로 의사소통	5	7.6
수화통역사를 통한 의사소통	50	75.8
기타	2	3.0
합계	66	100.0

9)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표 IV-14>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66명을 대상으로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응답에는 <표 IV-21>과 같이 문화예술교육이 41명(62.1%)으로 가장 높았고, 인문교양교육 24명(36.4%), 직업능력교육 23명(34.8%), 시민참여교육 7명(10.6%), 기초문해교육 5명(7.6%), 학력보완교육 3명(4.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N=66)

구분	빈도(명)	백분율(%)	케이스백분율(%)
기초문해교육	5	4.9	7.6
학력보완교육	3	2.9	4.5
직업능력교육	23	22.3	34.8
문화예술교육	41	39.8	62.1
인문교양교육	24	23.3	36.4
시민참여교육	7	6.8	10.6
합계	103*	100.0	156.1

* 복수응답

10)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만족스러운 영역

<표 IV-14>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66명을 대상으로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무엇이였는지에 대한 응답에는 <표 IV-22>와 같이 교육 내용이 만족스럽다가 36명(54.5%)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시간대가 만족스럽다가 22명(33.3%), 운영방식 및 진행과정이 만족스럽다가 21명

(31.8%), 담당 강사가 만족스럽다가 12명(18.2%), 교육비가 만족스럽다가 11명(16.7%), 교육시설이 만족스럽다가 9명(13.6%), 교육장소가 가깝다가 5명(7.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2>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만족스러운 영역(N=66)

구분	빈도(명)	백분율(%)	케이스백분율(%)
교육 내용이 만족스럽다.	36	31.0	54.5
담당 강사가 만족스럽다.	12	10.3	18.2
운영방식 및 진행과정이 만족스럽다.	21	18.1	31.8
교육시설이 만족스럽다.	9	7.8	13.6
교육시간대가 만족스럽다.	22	19.0	33.3
교육비가 만족스럽다.	11	9.5	16.7
교육장소가 가깝다.	5	4.3	7.6
합계	116*	100.0	175.8

* 복수응답

11)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불만족스러운 영역

<표 IV-14>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66명을 대상으로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무엇이였는가에 대한 응답에는 <표 IV-23>과 같이 교육 장소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가 33명(50.0%)으로 가장 높았고,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안내 및 정보가 부족하다가 24명(36.4%),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가 21명(31.8%),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적절치 않거나 수준이 맞지 않는다가 12명(18.2%), 교육시설이 낙후되어 있다가 11명(16.7%), 교육

시간대가 적합하지 않다가 10명(15.2%), 수강료가 부담이 된다가 7명(10.6%), 기타 1명(1.5%)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에는 불만족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었다.

<표 IV-23>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불만족스러운 영역(N=66)

구분	빈도(명)	백분율(%)	케이스백분율(%)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적절치 않거나 수준이 맞지 않는다.	12	10.1	18.2
교육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11	9.2	16.7
교육 장소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	33	27.7	50.0
교육 시간대가 적합하지 않다.	10	8.4	15.2
수강료가 부담이 된다.	7	5.9	10.6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21	17.6	31.8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안내 및 정보가 부족하다.	24	20.2	36.4
기타	1	0.8	1.5
합계	119	100.0	180.3

* 복수응답

3.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요구 실태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계획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는 <표 IV-24>와 같이 참여할 계획이다가 99명(69.7%),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가 43명(30.3%)으로 나타났다.

<표 IV-24>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계획

구분	빈도(명)	백분율(%)
참여 할 계획이다.	99	69.7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43	30.3
합계	142	100.0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우선순위

<표 IV-24>에서 앞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99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할 경우 어느 기관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의 응답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해 중요도순으로 1순위에 3점, 2순위에 2점, 3순위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해석하였다.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결과는 <표 IV-25>와 같이 1순위에는 농아인협회/수화통역센터가 232점으로 가장 높았고, 2순위는 장애인복지관이 109점, 3순위는 장애인고용공단/직업전문학교와 학원이나 전문교육원(평생교육원)이 각각 55점으로 나타났다.

<표 IV-25>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우선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농아인협회/수화통역센터	66*3	14*2	6*1	232
장애인복지관	6*3	35*2	21*1	109
장애인고용공단/직업전문학교	6*3	11*2	15*1	55
특수학교(전공과)	2*3	1*2	2*1	10
대학 또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2*3	1*2	4*1	12
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등	2*3	8*2	15*1	37
학원이나 전문교육원(평생교육원)	8*3	9*2	13*1	55

<표 IV-25>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우선순위(표 계속)

종교시설	6*3	9*2	9*1	45
기타	1*3	-	-	3
빈도(명)	99	88	85	

3)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표 IV-24>에서 앞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99명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앞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할 경우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가에 대한 응답 간에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다중응답교차분석의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26>과 같다. 전체적으로 직업능력교육이 42명(36.2%)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교육 31명(26.7%), 기초문해교육 17명(14.7%), 인문교양교육과 시민참여교육이 각각 12명(10.3%), 학력보완교육 2명(1.7%)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문화예술교육이 32.1%, 여성은 직업능력교육이 48.3%로 가장 높았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학력보완교육이 가장 낮았다. 연령에 따른 희망 프로그램의 내용은 전 연령층에서 직업능력교육이 가장 높게 나왔고, 학력보완교육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각장애인의 학력과 추후 희망프로그램의 내용 간의 관계는 2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먼저, 학교과정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학이상의 5가지의 변수로 수정하여 실시한 결과 무학은 기초문해교육이 50.0%, 초등학교졸업은 문화예술교육이 36.8%,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은 모두 직업능력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통합교육 유무는 청각장애인의 특성상 특수학교졸업과 일반학교졸업으로 변수를 수정하여 실시한 결과 특수학교졸업은 직업능력교육(36.2%), 일반학교졸업은 문화예술교육(38.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발생시기에 따른 희망 프로그램의 내용은 ‘0~1세’, ‘2~6세’ 모두 직업능력교육이 높게 나타났고, ‘7세 이상’은 문화예술교육과 인문교양교육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에 따른 희망 프로그램의 내용은 모두 직업능력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26> 인구학적 변인별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N=99) 단위 : 명(%)

구분		기초문해 교육	학력보 완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 교육	인문교양 교육	시민참 여교육	합계
성 별	남	10(17.9)	1(1.8)	13(23.2)	18(32.1)	8(14.3)	6(10.7)	56(48.3)
	여	7(11.7)	1(1.7)	29(48.3)	13(21.7)	4(6.7)	6(10.0)	60(51.7)
	합계	17(14.7)	2(1.7)	42(36.2)	31(26.7)	12(10.3)	12(10.3)	116(100.0)*
연 령	20대	1(6.7)	0(0.0)	7(46.7)	5(33.3)	1(6.7)	1(6.7)	15(12.9)
	30~40대	5(8.5)	2(3.4)	24(40.7)	15(25.4)	5(8.5)	8(13.6)	59(50.9)
	50대 이상	10(25.0)	0(0.0)	11(27.5)	10(25.0)	6(15.0)	3(7.5)	40(34.5)
	무응답	1(50.0)	0(0.0)	0(0.0)	1(50.0)	0(0.0)	0(0.0)	2(1.7)
	합계	17(14.7)	2(1.7)	42(36.2)	31(26.7)	12(10.3)	12(10.3)	116(100.0)*
학 교 과 정	무학	4(50.0)	0(0.0)	3(37.5)	1(12.5)	0(0.0)	0(0.0)	8(6.9)
	초등학교졸업	5(26.3)	0(0.0)	6(31.6)	7(36.8)	1(5.3)	0(0.0)	19(16.4)
	중학교졸업	2(7.4)	0(0.0)	12(44.4)	4(14.8)	4(14.8)	5(18.5)	27(23.3)
	고등학교졸업	4(10.8)	1(2.7)%	12(32.4)	11(29.7)	4(10.8)	5(13.5)	37(31.9)
	대학이상	2(8.0)	1(4.0)	9(36.0)	8(32.0)	3(12.0)	2(8.0)	25(21.6)
	합계	17(14.7)	2(1.7)	42(36.2)	31(26.7)	12(10.3)	12(10.3)	116(100.0)*
통합 교육 유무	무학	4(50.0)	0(0.0)	3(37.5)	1(12.5)	0(0.0)	0(0.0)	8(6.9)
	특수학교	10(14.5)	1(1.4)	25(36.2)	15(21.7)	9(13.0)	9(13.0)	69(59.5)
	일반학교	3(7.7)	1(2.6)	14(35.9)	15(38.5)	3(7.7)	3(7.7)	39(33.6)
	합계	17(14.7)	2(1.7)	42(36.2)	31(26.7)	12(10.3)	12(10.3)	116(100.0)*
장애 발생 시기	0~1세	9(25.0)	1(2.8)	17(47.2)	8(22.2)	0(0.0)	1(2.8)	36(31.0)
	2~6세	7(10.1)	1(1.4)	23(33.3)	20(29.0)	9(13.0)	9(13.0)	69(59.5)
	7세 이상	1(9.1)	0(0.0)	2(18.2)	3(27.3)	3(27.3)	2(18.2)	11(9.5)
	합계	17(14.7)	2(1.7)	42(36.2)	31(26.7)	12(10.3)	12(10.3)	116(100.0)*
월 평균 소득	135만원 이하	10(17.2)	0(0.0)	21(36.2)	14(24.1)	6(10.3)	7(12.1)	58(50.0)
	136~298만원	7(14.6)	2(4.2)	17(35.4)	13(27.1)	5(10.4)	4(8.3)	48(41.4)
	299~427만원	0(0.0)	0(0.0)	4(40.0)%	4(40.0)	1(10.0)	1(10.0)	10(8.6)
	합계	17(14.7)	2(1.7)	42(36.2)	31(26.7)	12(10.3)	12(10.3)	116(100.0)*

* 복수응답

4) 청각장애인 강사의 필요성

<표 IV-24>에서 앞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99명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인 강사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앞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할 경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의 청각장애 유무에 대한 응답에는 <표 IV-27>과 같이 농인이 62명(62.6%), 청인이 37명(37.4%)으로 나타났다.

<표 IV-27> 청각장애인 강사의 필요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청인	37	37.4
농인	62	62.6
합계	99	100.0

5) 담당 강사와의 희망하는 의사소통 방식

<표 IV-24>에서 앞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99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할 경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와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응답에는 <표 IV-28>과 같이 강사와 직접 수화로 의사소통이 71명(71.7%)으로 가장 많았고, 수화통역사를 통한 의사소통이 26명(26.3%), 강사와 필담으로 의사소통이 2명(2.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8> 담당 강사와의 희망하는 의사소통 방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강사와 직접 수화로 의사소통	71	71.7
강사와 필담으로 의사소통	2	2.0
수화통역사를 통한 의사소통	26	26.3
합계	99	100.0

6)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적절한 빈도

<표 IV-24>에서 앞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99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할 경우 프로그램의 실시 빈도에 대한 응답에는 <표 IV-29>와 같이 기초문해교육의 경우 한 달에 1~2회가 30명(42.9%)으로 가장 많았고, 주 2~3회가 26명(37.1%), 주말에 12명(17.1%), 매일이 2명(2.9%)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력보완교육의 경우 주 2~3회가 25명(43.9%)으로 가장 많았고, 한 달에 1~2회가 22(38.6%), 주말에 9명(15.8%), 매일이 1명(1.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능력교육의 경우 한 달에 1~2회가 29명(37.2%)으로 가장 많았고, 주 2~3회가 28명(35.9%), 매일이 12명(15.4%), 주말에 9명(11.5%)의 순으로 나타났고,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한 달에 1~2회가 30명(43.5%)으로 가장 많았고, 주 2~3회가 22명(31.9%), 주말에 15명(21.7%), 매일이 2명(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문교양교육의 경우 한 달에 1~2회가 28명(49.1%)으로 가장 많았고, 주 2~3회가 21명(36.8%), 주말에 8명(14%)의 순으로 나타났고, 시민참여교육의 경우 한 달에 1~2회가 36명(56.3%)으로 가장 많았고, 주 2~3회가 18명(28.1%), 주말에 10명(15.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9>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적절한 빈도 (N=99)

구분		빈도(명)	백분율(%)	케이스백분율(%)
기초문해교육	매일	2	2.9	1.4
	주 2~3회	26	37.1	18.3
	주말에	12	17.1	8.5
	한 달에 1~2회	30	42.9	21.1
	합계	70*	100.0	49.3

<표 IV-29>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적절한 빈도 (표 계속)

학력보완교육	매일	1	1.8	0.7
	주 2~3회	25	43.9	17.6
	주말에	9	15.8	6.3
	한 달에 1~2회	22	38.6	15.5
	합계	57*	100.0	40.1
직업능력교육	매일	12	15.4	8.5
	주 2~3회	28	35.9	19.7
	주말에	9	11.5	6.3
	한 달에 1~2회	29	37.2	20.4
	합계	78*	100.0	54.9
문화예술교육	매일	2	2.9	1.4
	주 2~3회	22	31.9	15.5
	주말에	15	21.7	10.6
	한 달에 1~2회	30	43.5	21.1
	합계	69*	100.0	48.6
인문교양교육	주 2~3회	21	36.8	14.8
	주말에	8	14.0	5.6
	한 달에 1~2회	28	49.1	19.7
	합계	57*	100.0	40.1
시민참여교육	주 2~3회	18	28.1	12.7
	주말에	10	15.6	7.0
	한 달에 1~2회	36	56.3	25.4
	합계	64*	100.0	45.1

* 복수응답

7)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희망 운영 시간

<표 IV-24>에서 앞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99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할 경우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에 대한 응답에는 <표 IV-30>과 같이 평일 오전과 평일 오후가 각각 31명(31.3%)으로 가장 높았고, 주말에 21명(21.2%), 평일 저녁시간이 16명(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0>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희망 운영 시간

구분	빈도(명)	백분율(%)
평일 오전	31	31.3
평일 오후	31	31.3
평일 저녁시간	16	16.2
주말에	21	21.2
합계	99	100.0

8)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적절한 수강료

<표 IV-24>에서 앞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99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할 경우 프로그램의 월평균 비용에 대한 응답에는 <표 IV-31>과 같이 무료가 63명(63.6%)으로 가장 많았고, 2만원 미만이 23명(23.2%), 2~4만원 정도가 8명(8.1%), 5~7만원 정도가 4명(4.0%), 8~10만원 정도가 1명(1.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적절한 수강료

구분	빈도(명)	백분율(%)
무료	63	63.6
2만원 미만	23	23.2
2~4만원 정도	8	8.1
5~7만원 정도	4	4.0
8~10만원 정도	1	1.0
합계	99	100.0

9)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표 IV-24>에서 앞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99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에는 <표 IV-32>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44명(44.4%)으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확대 38명(38.4%),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 34명(34.3%), 다양한 교육적 접근 방법 19명(19.2%), 다양한 강사 13명(13.1%), 교육에 필요한 시설 확충 11명(11.1%), 지역 사회와 연계 6명(6.1%), 기타 2명(2.0%)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에는 수화통역에 대한 홍보가 있었다.

<표 IV-32>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N=99)

구분	빈도(명)	백분율(%)	케이스백분율(%)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44	26.3	44.4
다양한 교육적 접근 방법	19	11.4	19.2
지역 사회와 연계	6	3.6	6.1
다양한 강사	13	7.8	13.1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	34	20.4	34.3
교육에 필요한 시설 확충	11	6.6	11.1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확대	38	22.8	38.4
기타	2	1.2	2.0
합계	167*	100.0	168.7

* 복수응답

10)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역할

<표 IV-24>에서 앞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99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응답에는 <표 IV-33>과 같이 수화통역 혹은 문자통역 제공이 60명(60.6%)으로 가장 높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34명(34.3%), 일상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30명(30.3%), 1:1 맞춤형 교육 17명(17.2%), 다양하고 편리한 시설확충 14명(14.1%), 강사진의 확충 4명(4.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3>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역할(N=99)

구분	빈도(명)	백분율(%)	케이스백분율(%)
1:1 맞춤형 교육	17	10.7	17.2
일상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30	18.9	30.3
다양하고 편리한 시설확충	14	8.8	14.1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34	21.4	34.3
수화통역 혹은 문자통역 제공	60	37.7	60.6
강사진의 확충	4	2.5	4.0
합계	159*	100.0	160.6

* 복수응답

11) 추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미참여 이유

앞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에는 <표 IV-34>와 같이 가정 혹은 일과 병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가 36명(38.3%)으로 가장

높았고,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안내 및 정보가 부족하다가 29명(30.9%),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와 교육 장소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가 각각 19명(20.2%),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가 16명(17.0%), 교육 시간대가 적합하지 않다와 수강료가 부담이 된다가 각각 15명(16.0%), 기타 2명(2.1%)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한국어의 이해 부족 등이 있었다.

<표 IV-34> 추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미참여 이유(N=94)

구분	빈도(명)	백분율(%)	케이스백분율(%)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19	12.6	20.2%
교육 장소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	19	12.6	20.2%
교육 시간대가 적합하지 않다.	15	9.9	16.0%
수강료가 부담이 된다.	15	9.9	16.0%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16	10.6	17.0%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안내 및 정보가 부족하다.	29	19.2	30.9%
가정 혹은 일과 병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36	23.8	38.3%
기타	2	1.3	2.1%
합계	151*	100.0	160.6%

* 복수응답

12)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기재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실시, 1:1 맞춤 교육 시 수화통역 제공,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비를 지원, 홍보 및 강의 시 수화 통역 제공, 편리한 장소, 청각장애인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청각장애인만을 위한 반을 구성,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교실, 인문학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시설개선 등이 있었다.

V. 논의

광주지역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실태 및 요구조사 연구는 광주 지역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및 청각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광주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7곳과 농아인협회 1곳 총 8기관의 평생교육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기관용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광주광역시 농아인 협회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배부된 설문지 중 회수된 142명의 설문지 자료를 데이터 통계 처리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

본 연구의 대상자 중 기관은 장애인복지관과 농아인협회를 포함한 8개 기관으로 이는 정인숙 외(2005)가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들이 학교 졸업이후 평생교육을 받은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이 34.0%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단체 23.6%,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을 바탕으로 하여 7개의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하였다. 여기에 본 연구에서의 대상이 청각장애인이므로 농아인협회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개인은 광주광역시 농아인협회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218명 중 200명을 임의표집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비슷하였다. 또한 연령대는 40대와 5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최근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대상자는 2015년 특

수교육연차보고서에 의하면 72%이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 점을 바탕으로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자가 주로 분포되어 있는 40~50대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졸업 27.4%, 중학교졸업 23.9%, 초등학교졸업 19.0%, 무학이 10.6%로 나타나 학력 면에서도 평생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교육부, 2015c). 장애등급은 2급 81.0%, 1급 16.9%로 나타나 대부분 1,2급의 농 상태였고, 장애원인으로는 후천적 요인이 가장 많았다. 장애발생 시기는 2~3세가 44.4%로 가장 많았고, 선천성 18.3% 등의 순으로 거의 대부분 언어습득 전에 장애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고, 주된 의사소통 방법으로 77.5%의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은 무직과 단순노무 종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절반 이상의 최종학력이 중학교 이하인 것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다. 황현철(2011)은 청각장애인의 직업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관리자나 사무종사자의 선택이 증가하였고, 학력이 낮을수록 단순노무직을 더 많이 선택했다고 하였다. 월평균가구소득은 통계청의 소득분위를 참고하여 조사하였고,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연금 등을 포함하도록 한 결과 거의 절반이 135만원 이하에 해당되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2014 장애인통계에서 나타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액 371만원의 36% 수준이다.

2.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1) 광주지역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관한 논의

광주지역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요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 기관, 프로그램 개발의 주체, 운영상의 어려운 점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요참여자는 50대 성인(62.5%)이 가장 많았고, 장애유형은 지적장애(25%), 뇌병변장애(20%), 지체장애(15%)와 자폐성장애(15%)가 전체 이용자의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정인숙 외(2005)의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조사 결과와 곽승철 외(2010)의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관의 실태 조사 그리고 노종채(2007)의 연구결과 및 2014년 특수교육실태조사(국립특수교육원, 2014a)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의 이용자가 특정 연령과 장애유형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생애단계별 프로그램과 각 장애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교육(40%)과 직업능력교육(26.7%)이 전체 프로그램의 절반을 넘는 반면 학력보완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프로그램의 내용이 몇몇 종류에 국한되어 있고 그 수 또한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특수교육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이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국립특수교육원, 2014a), 한명주(2012)는 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기초문해교육(28.3%), 문화예술교육(24.5%), 학력보완교육(18.9%)의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이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 기관은 8곳의 복지관 중 4곳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 받아 운영하는 반면 절반인 4곳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한 응답에 5곳의 기관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과 관련 된다고 볼 수 있고, 2014년 특수교육실태조사에서도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으로 ‘예산부족’이 가장 많이 나타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지원과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국립특수교육원, 2014a). 정인숙 외(2005)는 장

애인에 관한 지원은 지방자치 단체에 따라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정책에서 우선시 되지 못하므로 지속적인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주체는 기관자체에서 개발하는 기관이 4곳으로 가장 많았다. 광승철 외(2010)의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관의 실태조사에서도 자체 개발(71.1%)이 가장 많았고, 이성봉 외(2007)의 연구결과와도 같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에 나타났던 각 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몇 개의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평생교육 기관 간의 교류를 통하여 장애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를 통한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서 본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실태는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그 내용, 미참여 이유,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및 청각장애인의 참여유도 방안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이 참여한 곳은 8개의 기관 중 2곳이었고, 이 중 농아인협회를 제외하면 전체 장애인복지관 중 청각장애인이 참여한 곳은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서의 프로그램 내용은 담당자와 면담 결과 직업능력교육에 속하는 바리스타과정이 전부였고 올해 처음으로 청각장애인이 참여했다고 했다. 이는 2014년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4a) 결과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농아인협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문화예술교육과 인문교양교육에 한정되었다. 이는 청각장애인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및 평생교육기관 간의 협력체제가 구축될 필요성을 보여준다.

청각장애인이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는 교육 장소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것과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안내 및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곽승철 외(2010)의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관의 실태 조사에서는 장애인의 다양한 장애특성으로 인해 먼 거리의 이동과 교통의 불편으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주거지 근처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학교시설이나 일반인을 위한 평생교육 기관 등을 활용하여 일반인과 장애성인이 함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기관의 담당자들이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응답한 것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강사와 수강생 사이의 의사소통의 중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수화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일반인 강사와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참여를 포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의 구성은 장애유형별로 구분하여 반을 구성하는 기관이 5곳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장애인을 각 유형별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의 이용 대상이 특정 장애유형에 한정되어 있어서 그 장애인만을 한 반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담당자로서 청각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추후 희망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직업능력교육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이는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무수히 많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 보급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유도 방안으로 수화통역사의 배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의사소통에 제한을 가진 청각장애인에게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실태에 관한 논의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실태는 평생교육에 대한 인지정도 및 필요성,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와 목적 및 참여기관, 프로그램의 접근 매체, 담당 강사의 청각장애 유무 및 강사와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참여한 프로그램의 내용 및 만족한 부분과 불만족한 부분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청각장애인들은 평생교육에 대해 절반 정도가 알고 있다고 하였고,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알려주었을 때 더 정확히 인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청각장애인에게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15)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장애인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합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는 절반 이상이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승철(2010), 박은혜 외(2007), 이성봉 외(2007)의 연구결과와도 같다. 특히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4a)와 정인숙 외(2005)의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이 다른 장애 유형보다 참여 경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적절한 서비스와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청각장애인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함을 시사한다. 오길승(2001)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필요성에 대해 일상생활에 적응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감각적 기능상의 문제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 정보지식사회로 인해 급변하는 세상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에 비해 보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였다. 한명주(2012)의 연구결과는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했지만 참여여부는 90% 이상이 참여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연구방법 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각장애인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목적은 약 절반 정도가 교양 및 자기계발이었고, 여가선용 및 취업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연결지어 보면 대부분 문화예술교육과 인문교양교육에 한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광승철 외(2010)의 연구에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목적이 기본 소양(지식)의 제고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했다. 장미숙(2014)은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욕구분석에서 취업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재활(22.5%)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직업이 없는 상태로 평생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알게 된 매체는 대부분 농아인협회(수화통역센터)를 통해서였고 친구 또는 선후배를 통해서가 뒤를 이었다. 이는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농아인협회(수화통역센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 청각장애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아인협회(수화통역센터)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요구됨을 시사한다(광승철 외, 2010).

청각장애인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 역시 대부분 농아인협회(수화통역센터)인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농아인협회(수화통역센터)에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함을 시사하고, 한 기관에 편중되어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기관에서 청각장애인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광승철 외(2010), 장미숙(2014)의 연구에서는 장애인 관련 기관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강창욱 외(2011)의 한국

농인들의 평생교육 실태 연구에서도 평생교육 참여 기관이 농아인 관련기관 (6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기에 그 특성상 농아인 관련 단체로 나왔지만, 위의 곽승철 외(2010), 장미숙(201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한 강사는 70%이상이 청인이었고 이들과의 의사소통 방식은 수화통역사를 통한 의사소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본 연구의 응답자 대부분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이 농아인협회/수화통역센터였기 때문에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수화통역사를 통해 강사와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참여한 프로그램의 불만족한 부분으로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응답으로 보아 향후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의 제공 시 담당 강사가 청인인 경우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문화예술교육이 가장 많았고, 인문교양교육과 직업능력교육이 뒤를 이었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4a)와 한명주(2012)의 연구에서도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문화예술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이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함을 시사한다. 곽승철 외(2010)의 연구에서는 문해교육과 정보교육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프로그램의 이용이 장애영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 응답자의 대부분이 지체 장애와 뇌 병변 장애인이어서 문해교육과 정보교육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다.

프로그램에서 만족스러운 부분은 교육 내용 및 시간, 운영방식 등이었고,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은 교육 장소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것과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안내 및 정보가 부족한 것,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 등으로 나타났다. 이성봉 외(2007)의 충남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요구 분석에서 평생교육의 불만족 이유가 편의시설 부족, 프로그램의 내용 부실 및 종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유사

한 결과를 보였다. 이에 대해 김도수(1999)는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 용이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적당한 교수설비와 장비, 개인에 따른 교육과정 수정 제공이 요구된다고 하였고, 정인숙(2005)은 장애인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3)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요구 실태에 관한 논의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는 추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와 희망 기관 및 희망 내용, 담당강사의 청각장애 유무와 선호하는 의사소통방식, 프로그램의 참여 비용, 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과 기관의 역할, 추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부분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청각장애인이 많았고 희망하는 기관은 농아인협회(수화통역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이었다. 장애인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일반 평생교육기관의 이용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이 언급되고 있다. 정인숙 외(2005)의 연구에서는 추후 희망 교육기관으로 청각장애인은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과 일반인과 함께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장애성인의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강조하였다. 조흥식(2001)은 감각기능에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지적인 기능에 문제가 없는 장애인의 경우, 평생교육 시설이나 기관을 별도로 마련하기보다는 비장애인을 위한 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정상화(normalization)의 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통합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성숙(2005)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서비스는 일반인과의 통합을 전제로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고 일반인과 함께 어울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15)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일반 평생교육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장애인 평생교육

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기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를 강제하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인력지원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평생교육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농아인협회는 청각장애인이 광주지역의 모든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화통역사를 적극 양성하여 배치하고, 일반 강사들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각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부여해 주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직업능력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실제 진행되고 있는 직업능력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은 동구장애인복지관의 바리스타 과정 뿐이었고, 청각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아인협회(수화통역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주로 인문교양교육에 한정되어 있어 직업능력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되는 것이 극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직업능력교육 및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장미숙(2014), 노종채(2007), 정인숙 외(2005)의 연구결과에서도 장애인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직업능력교육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15)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직업과 관련하여 특수교육에서 직업교육과 연계하고, 다양한 직업군의 개발 및 전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가 농인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강사와 의사소통 방식으로는 직접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수화통역사를 통한 의사소통이 뒤를 이었다. 강창욱 외(2011)의 한국농인들의 평생교육 실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의사소통의 제한을 받지 않고 참여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

의 표현으로 생각되어진다. 또한 청각장애인 전문 강사의 양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비용은 무료를 가장 원했고 2만원 미만이 뒤를 이었다. 이는 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에서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과 연결 지을 수 있는데,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의 지원 및 참여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정인숙 외(2005)의 연구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을 일반성인 대상 평생교육과 구별하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곽승철 외(2010)의 연구에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비와 관련하여 기관 종사자와 이용자의 대부분이 무료를 원하고 있어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속적인 교육비 지원은 필수 조건이라고 하였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역할은 수화통역 혹은 문자통역 제공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다음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가정 혹은 일과 병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과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안내 및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가 중요하고, 청각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함을 시사한다. 장미숙(2014)의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이에 대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실용적이면서 장애유형이나 장애특성에 따라 생애주기별로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노종채(2007)의 연구에서는 이동과 각종편의 시설개선사항요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법규화 또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명주(2012)의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가 많아 장애 유형에 따른 제한된 프로그램이 아닌 모두가 참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장애유형별 프로그램이 개발 지원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광주지역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청각장애인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에 기초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지역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알아 본 결과 주요 이용자가 특정 연령과 장애유형에 편중되어 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 문화예술교육과 직업능력교육으로 제한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관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지원 또한 미흡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교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매우 낮게 나타났고,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교육 장소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며,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프로그램의 부족 및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참여유도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각장애인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둘째,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참여 비율은 낮아서 이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와 홍보가 필요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접근 매체나 참여한 기관이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청각장애인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문화 예술교육에 편중 되어 있어 6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에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장소와 교통의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여건에 맞는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매체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는 추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청각장애인이 많았고 희망하는 기관으로 농아인협회(수화통역센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 농아인협회(수화통역센터)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고, 청각장애인들이 한 기관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기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농아인협회는 지원과 교육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화통역사를 적극 양성하여 일반 평생교육 기관에 배치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일반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도록 하고, 일반인 및 일반 강사들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또한 직업능력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취업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강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강사와 직접 수화로 의사소통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적인 청각장애인 강사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어 청각장애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2. 제언 및 연구의 제한점

이상과 같은 결론에 근거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효율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및 관련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인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접근에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각장애인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매체나 참여하는 기관이 농아인협회(수화통역센터)에 편중 되어있어 청각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6개 영역에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청각장애인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시행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고 특정 장애유형에 편중되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지고 있다. 법률의 시행과 모든 장애유형에 균등하게 평생교육이 제공되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여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청각장애인복지관이나 청각장애인 전문 직업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청각장애인들의 직업능력교육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현실적으로 농아인협회(수화통역센터)나 일반 기관에서 실현되기 어렵고, 광주에 유일하게 인화학교에 청각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었으나 ‘도가니’ 사건으로 인해 학교와 보호작업장이 폐쇄되면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만한 곳이 없어, 이들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가 요구된다.

넷째, 전문적인 청각장애인 강사를 발굴 및 양성해야 한다. 일반인과의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로 직접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 강사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실제 광주지역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

하는 청각장애인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청각장애인 중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을 발굴하여 강사로 초빙하거나,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일산, 부산, 대전, 대구, 전남) 등과 연계하여 청각장애인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육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이 연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청각장애인들이 주로 이용가능한 장애인복지관과 농아인협회(수화통역센터)로 한정하였지만 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평생교육기관에서 청각장애인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대한 운영 실태를 알아보는 연구와 청각장애인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다른 지역의 청각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에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이 있다.

일곱째, 양적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면담 등을 통한 질적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창욱·노은진(2011). 한국농인들의 평생교육 실태 연구.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 연구**, 2(1), 113-140.
- 고용노동부(2014). **2014 장애인통계**. 세종특별자치시.
- 공지예(2006). 청각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욕구조사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승철·이유리·임경원(2010).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관의 실태 및 개선방안. **정서·행동장애연구**, 26(4), 207-247.
-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1179호 (2015).
-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제4457호 (2015).
-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15).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 광주평생교육진흥원(2014). **장애인분야 평생교육 진흥 대책 마련을 위한 평생교육 심포지엄 자료집**.
- 교육기본법, 법률 제 13003호 (2015).
- 교육부(2011).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세종시.
- 교육부(2013a). **2011·2012평생교육백서**. 세종시.
- 교육부(2013b).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세종시.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세종시.
- 교육부(2014). **2013년 평생교육백서**. 세종시.
- 교육부(2015a). **특수교육통계**. 세종시.
- 교육부(2015b).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 세종시.
- 교육부(2015c). **2015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세종시
- 국가인권위원회(2007).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서울시.

- 국립특수교육원(2013). **2013년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보고서**. 경기도 안산.
- 국립특수교육원(2014a). **2014 특수교육 실태조사**. 경기도 안산.
- 국립특수교육원(2014b).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역량 강화 과정**. 2014년도 직무연수 제8기. 경기도 안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2933호 (2014).
- 김도수(1998). 장애인의 통합교육과 평생교육체제. **현장특수교육**, 5(4), 8-19.
- 김도수(1999). **장애인 통합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체제 구축**. 국내세미나 자료집, - (6), 1-27, 경기도 안산 : 국립특수교육원.
- 김동희(2001). 장애인 평생교육훈련기관간 협력체제 구축방안. **특수교육 정책포럼**, 2001(-), 137-142, 경기도 안산 : 국립특수교육원.
- 김두영(201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순애(2007). 공공도서관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일(1998). 장애인 평생교육체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현·김종표·문종철·이복희(2010).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경기 : 양서원.
- 김중서·황종건·김신일·한송희(2001). **평생교육개론**. 서울 : 교육과학사.
- 김진호(2002). 장애학생의 전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적용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37(2), 25-40.
- 김진호(2004). 충남지역 특수학교 발달장애 졸업생의 성인생활 실태 연구.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5(3), 225-247.
- 김진화·고영화·권재현·정민주(2010).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개발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6(3), pp. 211~236.

- 노종채(2007).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한민국헌법**(1987).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 류문화·김종무·유애란·이상훈·장병연(2000).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3), 1-117, 경기도 안산 : 국립특수교육원.
- 박경실·전기선·진규동·한우섭·최영준·김대식·김주섭·송민열·신재홍·최용범(2013). **평생교육론**. 서울 : 학지사.
- 박성숙(2005). 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승희·박현숙·박희찬 역(2006). **장애청소년 전환교육**. 서울 : 시그마프레스.
- 박은주(2005). 장애인 평생교육 필요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혜·원종례·김주영·최옥이(2007).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E시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연구**, 14(1), 3-24.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18호 (2014).
- 배상미(2009). 성인학습자의 지역사회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분석.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장오(2009). **평생교육개론**. 경기 : 서현사.
- 백은희, 곽승철, 전병운, 김종인(2001).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교육학연구**, 36(1), 169-205.
- 보건복지부(2011).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세종시.
- 보건복지부(2014a).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세종시.
- 보건복지부(2014b). **등록장애인현황**. 세종시.
- 송태화(2001). 평생교육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기(2001). **장애인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특수교육 정책포럼, 2001(-), 35-37. 경기도 안산 : 국립특수교육원.
- 안홍선·권혁훈(2011). **평생교육사 실습 이론과 실천**. 경기 : 양서원.
- 오길승(2001). **장애인 평생교육체제 구축 방안에 관한 토론**. 특수교육 정책포럼, 2001(-), 39-47, 경기도 안산 : 국립특수교육원.
- 유경원(2010). **성인학습자 평생교육프로그램 실태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옥한(2014).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경기 : 양서원.
- 이기연(2014).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성과 결정 요인**.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성봉·정해동(2007). **충남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요구 분석. 지체·중복·건강장애 연구, 50(3), 23-39.**
- 이은철·김진호(2007). **전환교육과 성인생활에 대한 청각장애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 비교연구.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8(3), 551-574.**
- 이진경(2004). **도시와 농촌 평생교육 참여자의 인식과 요구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충렬·박재국·서보순(2015). **장애인을 위한 지역 평생교육 기반구축 방안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2), 473-499.**
- 이항순(2011). **청각장애인의 직업적응을 위한 평생교육 필요성에 대한 연구**. 가톨릭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숙(2014).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욕구분석**.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12127호 (2013).**
-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3216호 (2015).**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65호 (2014).**

- 정동영(2001). **장애인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특수교육 정책포럼, 2001(-), 69-124. 경기도 안산 : 국립특수교육원.
- 정동영·정동일·정인숙(2001).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체제 구축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 1-336. 경기도 안산 : 국립특수교육원.
- 정동영·정동일·정인숙(200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의 요구분석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방향 탐색. **특수교육**, 2(1), 5-35.
- 정인숙(2005). 장애성인 평생교육 현황과 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 **국립특수교육연구**, 12(1), 75-98.
- 정인숙·김현진·김형일·정동영·정희섭(2005).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9), 1-545. 경기도 안산 : 국립특수교육원.
- 정해동·이성봉(2007). 충남지역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요구분석. **특수교육연구**, 14(1), 25-45.
- 조흥식(2001). **장애인 평생교육체제 구축방안**. 특수교육 정책포럼, 2001(-), 19-33. 경기도 안산 : 국립특수교육원.
- 최성호(2002). 평생학습 차원의 여성 여가교육 참여 실태와 요구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운실(2015). 평생교육의 트렌드와 미래방향. **2015 광주평생교육정책포럼**, 광주광역시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 통계청(2007). **한국표준직업분류표**. 대전광역시.
- 통계청(2010).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대전광역시.
- 통계청(2015). **2015년 가계동향조사**. 대전광역시.
- 평생교육법**, 법률 제12339호 (2014).
- 한명주(201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백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훈·유윤숙(2009). 2008학년도 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

-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34(-), 65-105.
- 행정자치부(2015).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서울특별시.
- 황현철(2011). 청각장애인의 직업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부록1>

광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청각장애인의 이용 실태 및 요구조사를 위한 설문지
 (기관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광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청각장애인들의 이용실태 및 요구조사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고,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본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리오니, 끝까지 성실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8.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연구자 김지영

지도교수 정은희

※ 연락처 : 010-9221-5445, E-mail : kjylovefeel@hanmail.net

※ 다음은 연구 상의 통계 분석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 또는 √ 표시를 하여 주시거나 직접 응답하여 주십시오.

1. 귀 기관의 시설형태는 무엇입니까?

- | | | |
|--------------------|---------------|--------------|
| ① 평생학습 기관 | ②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③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 ④ 장애인복지관 | ⑤ 사회(종교)단체 | ⑥ 농아인협회 |
| ⑦ 기타() | | |

2. 귀 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주요 대상은 누구입니까?

- ① 성인 ② 장애인 ③ 아동 및 청소년
 ④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⑤ 기타()

3. 귀 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의 장애유형은 무엇입니까?(해당사항 모두 선택)

- ① 지체장애 ② 뇌병변장애 ③ 시각장애
 ④ 청각장애 ⑤ 언어장애 ⑥ 안면장애
 ⑦ 지적장애 ⑧ 정신장애 ⑨ 자폐성장애
 ⑩ 기타()

4. 귀 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주요 대상 연령은 어디에 속합니까?

- ① 20세 미만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59세 ⑥ 60세 이상

※ 다음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운영 실태 및 청각장애인의 이용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 또는 √ 표시를 하여 주시거나 직접 응답하여 주십시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예:한글교실, 검정고시, 제과제빵, 바리스타, 스포츠, 천연염색, 인문학, 인권교육 등등)

5. 귀 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복체크가능)

- ① 기초문해교육(한글교실, 글짓기, 다문화교육 등)
 ② 학력보완교육(초중고등 학력보완, 검정고시, 과학교실, 학점은행제 강좌 등)

- ③ 직업능력교육(제과제빵, 조리, 바리스타, 자격증취득과정, 창업관련강좌 등)
- ④ 문화예술교육(스포츠, 천연염색, 도자기·공예, 영화, 미술, 요가, 수영 등)
- ⑤ 인문교양교육(인문학강좌, 식생활, 의료, 육아, 재테크, 예절교육, 인터넷교육 등)
- ⑥ 시민참여교육(인권교육, 자원봉사, 학습동아리교육, 환경실천교육 등)
- ⑦ 기타()

6. 수강생들이 부담하는 교육비 외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중복체크가능)

- ① 없음 ② 민간단체 ③ 지방자치단체
- ④ 국가 ⑤ 종교단체 ⑥ 기타()

7. 귀 기관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십니까?

- ① 전문가 의뢰 ② 자체 개발 ③ 타 기관 프로그램 활용
- ④ 외국 프로그램 활용 ⑤ 설문지 등을 통한 수강생들의 요구 수렴
- ⑥ 기타()

8. 귀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하는 사람의 주된 직업은 무엇입니까?
(중복체크가능)

- ① 사회복지사 ② 특수교사 ③ 직업재활사
- ④ 수화통역사 ⑤ 관련분야 전문 강사 ⑥ 기타 ()

9. 귀 기관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프로그램 개발 ② 강사 확보 ③ 예산 확보
- ④ 시설 확보 ⑤ 수강생 확보 ⑥ 홍보
- ⑦ 기타()

13. 귀 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① 장애유형별로 구분하여 반을 구성
- ② 청각장애인만을 위한 반을 구성
- ③ 모든 수강생을 혼합하여 반을 구성

14. 청각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세 가지를 가장 필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골라 써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기초문해교육(한글교실, 글짓기, 다문화교육 등)
- ② 학력보완교육(초중고등 학력보완, 검정고시, 과학교실, 학점은행제 강좌 등)
- ③ 직업능력교육(제과제빵, 조리, 바리스타, 자격증취득과정, 창업관련강좌 등)
- ④ 문화예술교육(스포츠, 천연염색, 도자기·공예, 영화, 미술, 요가, 수영 등)
- ⑤ 인문교양교육(인문학강좌, 식생활, 의료, 육아, 재테크, 예절교육, 인터넷교육 등)
- ⑥ 시민참여교육(인권교육, 자원봉사, 학습동아리교육, 환경실천교육 등)
- ⑦ 기타()

15. 청각장애인이 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프로그램의 다양화
- ②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
- ③ 장애인에 대한 강사의 이해와 자질
- ④ 수화통역사 배치
- ⑤ 기타()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2>

광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청각장애인의 이용 실태 및 요구조사를 위한 설문지
(개인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광주지역 청각장애인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실태와 요구조사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고,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본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리오니, 끝까지 성실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8.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연구자 김지영

지도교수 정은희

※ 연락처 : 010-9221-5445, E-mail : kjylovefeel@hanmail.net

※ 다음은 연구 상의 통계 분석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 또는 √ 표시를 하여 주시거나 직접 응답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 ① 18~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3. 귀하의 최종 학력은?(학교중퇴나 재학 중인 사람도 졸업 란에 ○ 또는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무학 ()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특수학교()		특수학교()		특수학교()		2,3년제 전문대학()	
	일반 학교	특수학급 ()	일반 학교	특수학급 ()	일반 학교	특수학급 ()	4년제 대학교()	
		일반학급 ()		일반학급 ()		일반학급 ()	대학원 이상()	
	검정고시()		검정고시()		검정고시()			

4. 귀하의 장애등급(중복장애 포함)은?

-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⑦ 미등록

5. 주된 장애의 원인은?

- ① 유전 ② 교통사고 ③ 산업재해
 ④ 후천적 질병(열병, 뇌수막염 등) ⑤ 원인불명 ⑥ 기타 ()

6. 주된 장애의 발생 시기는?

- ① 선천적(출생시) ② 0-1세 ③ 2-3세 ④ 4-6세 ⑤ 7-12세 ⑥ 13세 이후

7. 귀하의 주된 의사소통방법은?

- ① 수화 ② 필담 ③ 구화 ④ 수화, 구화, 필담 모두 사용 ⑤ 기타()

8. 귀하의 직업은?

-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⑥ 판매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단순노무 종사자 ⑨ 학생
⑩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⑪ 무직 ⑫ 기타()

9.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연금 등 포함)

- ① 135만원 이하 ② 136~298만원 ③ 299~427만원
④ 428~544만원 ⑤ 545만원 이상

※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실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 또는 √ 표시를 하여 주시거나 직접 응답하여 주십시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예 : 한글교실, 검정고시, 제과제빵, 바리스타, 스포츠, 천연염색, 인문학, 인권교육 등등)

10. 귀하께서는 평소 평생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알지 못한다. ② 별로 잘 알지 못한다.
③ 다소 알고 있는 편이다.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11. 귀하께서는 현대인들에게 평생교육이 어느 정도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③ 다소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12. 귀하께서는 최근 3년 동안 몇 개 강좌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 ① 참여한 적이 없다. **(21번으로 이동하십시오.)**
- ② 3년 동안 1~2개 참여한 적이 있다.
- ③ 1년에 2~3개 참여한 적이 있다.
- ④ 1년에 4개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

13. 귀하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취업 및 전직 ② 자격증 취득 ③ 학점 및 졸업장 취득
- ④ 교양 및 자기계발 ⑤ 건강증진 ⑥ 여가선용
- ⑦ 친목도모 ⑧ 기타()

14. 귀하께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어떤 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중복체크가능)

- ① 인터넷 ② TV, 신문, 취업정보지
- ③ 학교, 공공기관(장애인고용공단 등) ④ 농아인협회(수화통역센터)
- ⑤ SNS(페이스북, 밴드 등등) ⑥ 직업소개소
- ⑦ 친구 또는 선후배 ⑧ 가족, 친지
- ⑨ 기타()

15. 귀하께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은 어디입니까?(중복체크가능)

- ① 농아인협회/수화통역센터 ② 장애인복지관
- ③ 장애인고용공단/직업전문학교 ④ 특수학교(전공과)

- ⑤ 대학 또는 대학부설평생교육원
- ⑥ 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등
- ⑦ 학원이나 전문교육원(평생교육원)
- ⑧ 종교시설
- ⑨ 기타()

16. 강사가 청인 혹은 농인 중 누구였습니까?

- ① 청인
- ② 농인

17. 강사와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 했습니까?

- ① 강사와 직접 수화로 의사소통
- ② 강사와 필담으로 의사소통
- ③ 수화통역사를 통한 의사소통
- ④ 기타()

18. 귀하께서 참여하신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중복체크 가능)

- ① 기초문해교육(한글교실, 글짓기, 가족문해교실 등)
- ② 학력보완교육(초중고등 학력보완, 검정고시, 과학교실, 학점은행제 강좌 등)
- ③ 직업능력교육(제과제빵, 조리, 바리스타, 자격증취득과정, 창업관련강좌 등)
- ④ 문화예술교육(스포츠, 천연염색, 도자기·공예, 영화, 미술, 요가, 수영 등)
- ⑤ 인문교양교육(인문학강좌, 식생활, 의료, 육아, 재테크, 예절교육, 인터넷교육 등)
- ⑥ 시민참여교육(인권교육, 자원봉사, 학습동아리교육, 환경실천교육 등)
- ⑦ 기타()

19. 귀하께서 참여하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특히 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선택)

- ① 교육 내용이 만족스럽다.
- ② 담당 강사가 만족스럽다.
- ③ 운영방식 및 진행과정이 만족스럽다.

- ④ 교육시설이 만족스럽다.
- ⑤ 교육시간대가 만족스럽다.
- ⑥ 교육비가 만족스럽다.
- ⑦ 교육장소가 가깝다.
- ⑧ 기타()

20. 귀하께서 참여하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선택)

- ①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적절치 않거나 수준이 맞지 않는다.
- ② 교육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 ③ 교육 장소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
- ④ 교육 시간대가 적합하지 않다.
- ⑤ 수강료가 부담이 된다.
- ⑥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 ⑦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안내 및 정보가 부족하다.
- ⑧ 기타()

※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 또는 √ 표시를 하여 주시거나 직접 응답하여 주십시오.

21. 귀하께서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 ① 참여 할 계획이다.(22번으로 이동하십시오.)
- ②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31번으로 이동하십시오.)

26.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도의 평생교육 실시 빈도를 선호하십니까? 각 프로그램 영역별로 선호하는 빈도를 체크해 주세요.

프로그램 영역	매일	주 2~3회	주말에	한 달에 1~2회	기타
기초문해교육	①	②	③	④	()
학력보완교육	①	②	③	④	()
직업능력교육	①	②	③	④	()
문화예술교육	①	②	③	④	()
인문교양교육	①	②	③	④	()
시민참여교육	①	②	③	④	()
기타()	①	②	③	④	()

※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

- 기초문해교육(한글교실, 글짓기, 가족문해교실 등)
- 학력보완교육(초중고등 학력보완, 검정고시, 과학교실, 학점은행제 강좌 등)
- 직업능력교육(제과제빵, 조리, 바리스타, 자격증취득과정, 창업관련강좌 등)
- 문화예술교육(스포츠, 천연염색, 도자기·공예, 영화, 미술, 요가, 수영 등)
- 인문교양교육(인문학강좌, 식생활, 의료, 육아, 재테크, 예절교육, 인터넷교육 등)
- 시민참여교육(인권교육, 자원봉사, 학습동아리교육, 환경실천교육 등)

27. 귀하께서는 하루 중 어떠한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를 선호하십니까?

- ① 평일 오전 ② 평일 오후 ③ 평일 저녁시간
 ④ 주말에 ⑤ 기타()

28. 귀하께서는 평생교육 비용이 월평균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무료
- ② 2만원 미만
- ③ 2~4만원 정도
- ④ 5~7만원 정도
- ⑤ 8만원~10만원 정도
- ⑥ 11만원 이상

29. 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체크가능)

- 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② 다양한 교육적 접근 방법
- ③ 지역 사회와 연계
- ④ 다양한 강사
- ⑤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
- ⑥ 교육에 필요한 시설 확충
- ⑦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확대
- ⑧ 기타()

30.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체크가능) → **응답 후 32번으로 이동하십시오.**

- ① 1:1 맞춤형 교육
- ② 일상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 ③ 다양하고 편리한 시설 확충
- ④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⑤ 수화통역 혹은 문자통역 제공
- ⑥ 강사진의 확충
- ⑦ 기타()

31. 귀하께서는 앞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복체크가능)

- 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 ② 교육 장소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
- ③ 교육 시간대가 적합하지 않다.
- ④ 수강료가 부담이 된다.
- ⑤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 ⑥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안내 및 정보가 부족하다.

⑦ 가정 혹은 일과 병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⑧ 기타()

32.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